

이 회보는 공문과 동일하므로 신속 정확히 처리



남하면 회보

제2023 - 16호
2023. 4. 19.(수)

본 회보는 일반 공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각종 행정 지시사항을 종합 시달함으로 공문서 감축과 소비절약 및 행정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니 전 이장은 마을 방송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램

반 장	반 장	개발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이 장

행복이 남하도는 남하면
(www.namha.go.kr)

남하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 | |
|----------------------|--------------------|
| - 남 하 면 장 : 940-7700 | - 총무담당 : 940-7710 |
| - 행복복지담당 : 940-7720 | - 개발담당 : 940-7730 |
| - 경제산업담당 : 940-7740 | - F A X : 940-7709 |

이장회의 시간(오전 11:00,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 회의일 : 첫째, 셋째주 수요일 ☆

☆ 등청일 : 둘째, 넷째주 수요일 ☆

〈차 례〉

□ 총무담당

1. 남하면 연중 동향보고 안내	1
2. 2023년 드론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1
3. 2023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홍보	1
4. 제31회 면민체육대회 개최 안내	2
5. 엠폭스(원숭이두창) 위기경보수준 주의 격상 안내	3
6.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안내	3
7.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8.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 홍보	4
9. 거창군 6만인구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 당부	4
10. 스토리가 있는 정오, 거창근대의료박물관 정원음악회 홍보	5

□ 행복복지담당

1. 경로위안행사 마을별 일정 추진 계획 제출	12
2. 2023년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스마트워치 지원사업	12
3. 2023년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안내	12
4. 2023년 문화누리카드 신청 안내	12
5.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추가인상 안내	13
6. 「행복이 남하도는 냉장고」 공유냉장고 운영	13
7.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협조	13

□ 개발담당

1. 2023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18
2. 황강취수장 설치사업 반대 홍보	18
3.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홍보	19
4. 2023년 상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 안내	19
5.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홍보	20
6.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안내	20
7. 거창군 120자원봉사대 가입 안내	20
8. 거창창포원 주민 참여정원 조성 참가자 모집 안내	21
9. 각종 건설공사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 요청	21
10. 2023년 영농기 대비 농업용수 확보 협조	21
11. 거창매립장 생활폐기물 반입 시 유의사항 안내	22
12.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운동 안내	22

□ 경제산업담당

1. 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지원가구 신청 및 추천 안내	31
2. 2023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사회복지시설)수요조사 안내	31
3. 2023년 축산발전사업 추진계획(2차)알림	32
4. 2023년 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안내	32
5. 2023년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 일제접종 시행 알림	33
6. 유기·유실동물 예방 및 동물 등록 홍보 협조	33
7. 상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 알림	33
8. 2024.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청 홍보 및 수요조사 실시 안내	34
9.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안내	34
10. 2023년도 희망블빛 지원사업 신청안내	35
11.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홍보	36
12.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기간 홍보	36
13.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안내	37
14. 20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안내	37
15. 2023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추진 안내	38
16. 2023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안내	38
17. '24~'25년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공모사업 안내	38
18. 2023년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39
19. 2024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수요조사 안내	40
20. 2023년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대상자 추가 모집 안내	40
21. 2023년 산불재난 예방 안내	40
22. 산불예방을 위한 농촌 불법소각 금지 안내	41
23.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농가) 수요조사 신청	41
24. 2023년 도라지 재배기술 교육 안내	42
25.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홍보요청	42
26. 2023년 주민제안 농정 공모사업 신청·접수	42
27. 2024년도 산림소득 유통·가공분야 공모계획 알림	43
28. 2023년 임산물 관련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43
29.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안내	44
30. 2023년 임산물유통기반 조성사업 신청 안내	44
31. 2023년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 2차 모집홍보	45
32. 2023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45
33. 2023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소액) 신청·접수	46
34. 2023년 산주직접실행 조림지 풀베기사업 신청·접수	46

총 무 담 당

1. 남하면 연중 동향보고 안내

[담당 : 이유라 940-7711]

행사·미담·수범사례·사건사고 등 마을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발생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주민여론 등 민심에 관한 사항 / 주요인사 등 내방
 - 마을, 단체 등 행사 / 사건·사고
- 시 기 : 수시(발생 즉시)
- 방 법 : 남하면 총무담당 연락(☎055-940-7710)

2. 2023년 드론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담당 : 온누리 940-7714]

드론메카조성과 드론을 통한 주민들의 일자리 기회 창출, 드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3년 4. ~ 12.
- 대 상 :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만18세 이상인 자)
- 사 업 비 : 30,000천원
- 지원한도 : 드론자격증 교육비의 50% 지원 ※ 1인 최대 1,000천원 지원
- 지원내용 : 1종/2종 드론자격증 취득 시 지원금 지급 ※ 미취득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신청방법 :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에 문의 후 신청
- 교육기관
 - 경남도립거창대학 드론교육원 (☎055-254-2991)
 - 유에어 드론교육원(☎010-9900-2702)
 - 에이원 농업회사법인(☎010-9667-0020)

3. 2023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홍보

[담당 : 온누리 940-7714]

경남의 사회지표 작성을 위한 2023년 경상남도 사회조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 2023. 4. 28. ~ 5. 17.(기간 중 20일간)
- 조사대상 : 53개 조사구 800가구, 만 15세 이상 가구원(표본조사)
- 조사항목 : 9개부문 52항목(주거교통, 문화여가, 교육 등)
- 조사방법 : 조사원 방문조사 및 인터넷조사 병행

4. 제31회 면민체육대회 개최 안내

(담당 : 온누리 940-7714)

면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운동경기와 노래자랑 행사를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제31회 남하면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일정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와 홍보바랍니다.

- 일 시 : 2023. 4. 29.(토) 09:40 ~ 16:00 ※ 개회식 10:10
- 장 소 : 남하초등학교 운동장
- 참여인원 : 500여명(면민 및 출향인 등)
- 주최주관 : 남하면체육회(회장 배병록)
- 행사내용 ‘
 - 식전공연, 개회식, 체육경기, 민속놀이, 노래자랑, 체험부스
- 시간계획

구분	시간		행사내용	비고
식전공연	09:40 ~ 10:00	20'	풍물공연	주악천녀패
준비체조	10:00 ~ 10:10	10'	몸풀기 체조	윤미소
개회식 (50')	10:10 ~ 10:11	1'	개회선언	수석부회장
	10:11 ~ 10:14	3'	국민의례	사무국장
	10:14 ~ 10:20	6'	내빈소개	체육회장
	10:20 ~ 10:26	6'	대회사	체육회장
	10:26 ~ 10:29	3'	환영사	면장
	10:29 ~ 10:50	21'	축사 및 경품추첨	군수님 등 참석내빈
체육경기	11:00 ~ 11:30	30'	파크골프 시범경기	파크골프협회
	11:30 ~ 12:00	30'	축구(PK)	축구협회
	10:50 ~ 12:00	70'	윷놀이 등 민속놀이	민속협회(이장자유회)
중 식	12:00 ~ 13:30	90'	뷔페식, 경품추천	
노래자랑	13:30 ~ 13:50	20'	축하공연	고고장구팀
	13:50 ~ 15:30	100'	면민한마당 노래자랑	체육회 사무국
	15:30 ~ 16:00	30'	시상, 경품추첨, 폐회	

○ 협조사항

- 마을별 윷놀이(4명) 및 노래자랑(1명 이상) 참가자 명단 제출
- 제출기한 : 2023. 4. 26.(수) / 제출서식 : 【붙임 1】 참조

5. 엠폭스(원숭이두창) 위기경보수준 주의 격상 안내

(담당 : 온누리 940-7714)

최근 해외여행력이 없는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원숭이 두창)환자가 증가됨에 따라 위기경보수준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조정되어 엠폭스 예방 행동 수칙등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엠폭스(원숭이두창)이란?
 - 제2급 감염병으로 발열, 오한, 림프절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인후통, 코막힘)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보통 1~4일 후 발진 증상이 나타남
- 엠폭스(원숭이두창) 예방수칙 : **【붙임 2】** 참조

6.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안내

(담당 : 온누리 940-7714)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거창군 자체 지원사업을 재안내하오니 조건에 맞는 청년 부부가 누락되지 않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19세~45세 이하 청년으로 다음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것
 -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지원금액 : 최대 600만원

구분	최초	2회	3회
신청시기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최초 신청 다음 연도 지급일이 속한 달	2회 신청 다음 연도 지급일이 속한달
지급금액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부부 모두),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

7.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담당 : 온누리 940-7714)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부 자 : 개인(법인, 단체 명의 불가능)
- 기 부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 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가능
- 기 부 금 : 연간 500만원 한도
- 기부혜택 : 세액공제(10만원 전액, 10만원 이상 16.5%) 및 답례품 제공(기부금의 30%제공)
- 세부내용 : **【붙임 3】** 참조

8.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 홍보 (담당 : 은누리 940-7714)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가 국내에 발생함에 따라 예방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란?
 -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서 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질환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붙임 4】 참조**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복장 갖춰입기
(밝은 색 긴소매 옷, 모자, 목수건, 양말, 장갑 등)
- 농작업 시에는 소매르래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중

- 풀밭에 앉을 때 돛자리 사용하기
-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

- 귀가 즉시 옷은 털어 세탁하기
- 샤워하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검은 딱지 등) 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기
-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9. 거창군 6만인구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 당부 (담당 : 은누리 940-7714)

거창군 6만명 인구 유지와 남하면 1천4백명 인구 유지를 위해 이장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추진기간 : 2023. 1. ~ 12.
- 추진목표 : 거창군 6만, 남하면 1천400명 유지
- 전입대상
 - 마을에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는 주민
 - 실거주자 중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귀농·귀촌 의사가 있는 타지역 주민
- ※ 마을별 임대 및 매매 가능한 빈집 현황 공유 : 개발담당(☎055-940-7732)

10. 스토리가 있는 정오, 거창근대의료박물관 정원음악회 홍보

(담당 : 은누리 940-7714)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유산을 관광지로 발굴해 방문객들에게 스토리와 쉼을 제공하고자 「스토리가 있는 정오, 거창근대의료박물관 정원음악회」를 개최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3. 4. 17. ~ 4. 28. / 점심시간(12:10 ~ 12:50) 2주간
- 장 소 : 근대의료박물관 정원(거창읍 시장1길 32)
- 대 상 : 거창군민 및 관광객 누구나
- 공연내용
 - 문화관광해설사가 소개하는 거창근대의료박물관 이야기
 - 거창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 공연팀의 정원음악회
- 시간계획

공연시간		내 용	비 고
12:10 ~ 12:20	10'	근대의료박물관 스토리소개	문화관광해설사
12:20 ~ 12:50	30'	통기타·국악 등 음악회 공연	7개 공연팀
12:50 ~ 12:55	5'	공연장 정리	다 함 께

- 홍 보 물 : **【붙임 5】** 참조

【붙임1 : 면민체육대회 출전자 신청 명단】

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자 명단

■ 종목 : 윷놀이

번호	선수명단		연령	성별	비 고
	마을명	성 명			
1					
2					
3					
4					

면민 한마음 노래자랑 출전자 명단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신 청 곡 (가수명)	별명 및 특기
			()	
			()	

※ 신청곡은 곡명과 (가수명)을 기재해 주십시오

2023년 4월 29일 실시하는 제31회 남하면한마음체육대회와 어울림마당 노래자랑에 위와 같이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3년 4월 일

마을이장 : (서명 또는 인)

남하면체육회장 귀하

【붙임2-1 : 엠폭스(원숭이두창) 예방 및 행동 수칙】

2023. 2. 22.

질병관리청

엠폭스

예방 및 행동 수칙

대국민용



엠폭스 예방수칙

- ✔ 손 씻기 등 개인적인 위생 수칙 준수
* 의심증상자 접촉 후 비누와 물 사용 손씻기 또는 알코올 성분 손 소독제 사용
- ✔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 엠폭스 의심증상자 피부병변(발진이나 딱지 등) 접촉 삼가
- ✔ 엠폭스 의심증상자 사용 물품(침구류, 수건, 의복, 세면대 등) 접촉 삼가
- ✔ 엠폭스 의심증상자와 부득이한 접촉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 아프거나 죽은 동물과의 직접 접촉 및 사용 물품 주의
- ✔ 아프리카 수입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 접촉 주의



엠폭스 의심증상(발진 등) 발생 시 행동요령

-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여 방역 당국의 조치사항 안내에 따름
- ✔ 엠폭스 진단 전까지 동거인을 비롯한 주위사람들과의 접촉 삼가
* 침구, 식기, 컵 등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능하면 생활공간을 분리
- ✔ 철저한 손위생 및 가족, 동거인 등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사용
* 피부병변을 긴 소매 및 바지 등으로 감싸 노출 최소화, 마스크 착용, 일회용 장갑 등
- ✔ 의심증상자의 쓰레기 및 침구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 확진되면 쓰레기는 폐기물로 별도 분리 배출하고 침구도 별도 세탁 시행
- ✔ 애완동물을 포함한 기타 동물과의 접촉 삼가

2023. 4. 13.



엠폭스 위기경보수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

엠폭스 환자 국내 발생 사례 증가에 따라
엠폭스의 위기경보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합니다.(’23.4.13.~)

주요 대응 조치

- ☑ (역학조사) 감염원 파악을 위한 심층 역학조사로 추가 감염자 발생 조사
- ☑ (환자·접촉자 등 관리) 증상 발생 모니터링 및 밀접 접촉자에 대한 백신접종 권고 강화
- ☑ (교육·홍보) 의료진, 성소수자 커뮤니티 등 중심으로 예방수칙 안내 및 교육 실시, 의심 증상 발생 시 신고 독려
- ☑ (진단·백신·치료제) 기 확보 중인 진단시약, 백신, 치료제 등으로 대응하되, 환자 증가 대비하여 필요시 추가 확보



- * 호흡기로 전파되는 코로나19, 메르스 등과 달리 엠폭스는 대부분 밀접한 피부접촉(성접촉 등)을 통해 제한적인 전파가 특징인 질환으로 일반 인구집단에서의 대규모 전파 가능성은 낮습니다.
- * 의심환자와 밀접접촉으로 의심증상이 있을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받아 주시고, 모르는 사람들과 밀접한 접촉(피부·성접촉)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3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내 고향 거창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내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소중히 모아진 기부금은 **거창발전을 위한 주민 복리사업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추진배경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
-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활용**

주요내용

기부자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 명의 불가능)
기부처	주소지 외의 광역·기초자치단체 ※ 거창군 주민 : 경상남도, 거창군 기부불가
기부금	연500만원 한도
혜택	세액공제(연말정산) + 답례품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 10만원 초과 ~ 500만원까지는 16.5% 세액공제 · (답례품) 기부금액 30% 내 지역특산물등 제공 ▷ 한우, 사과, 사과즙, 부각, 벌꿀, 칩즙, 잡곡, 거창사랑상품권 등
기부금 사용처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기부방법

- 온라인 기부 : 고향사랑e음(<https://www.ilovegohyang.go.kr>) 접속



- 오프라인 기부 : 농협은행, 농축협 방문 접수

문의처 : 거창군 전략담당관 ☎ 940-3693

【붙임4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 리플릿】

3GO! 진드기는 흔적을 남깁니다!

관리 1 증상 살펴보고!



고열/오한



두통



근육통



오심/구토/설사

관리 2 물린 흔적 찾아보고!



검은 딱지







물린 자국



(주로 물린는 부위)

관리 3 빨리 치료하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보스카리아증, 유행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렐양열 등
- 주로 뒷밭작업 등 농작업을 하거나, 들산, 나물채취 등의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감염위험이 있습니다.
- 발열, 근육통, 설사 등 **갑자기 몸살 증상과 유사하므로 빠른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 진료 시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자 5명 중
1명 사망**
(2013-2022년, SFTS기준)
아프면 의료기관 방문

진드기!!!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

질병관리청

진드기 매개 감염병!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방 1 옷 제대로 입고



-  목수건
-  장갑
-  토시
-  장화
-  모자
-  방석
-  모자
-  간발
-  간바지
-  목이 긴 양말

예방 2 기피제 뿌리고



기피제 X **기피제 O**

[진드기 기피제 주요 성분 포함량]

- 디알릴탈피탈(DEET) 7~30% (농약: 100%가 100%)
- 카피리피(1%) (농약: 100%가 100%)
- 피리피(10%) (농약: 100%가 100%)
- 피리피(10%) (농약: 100%가 100%)

진드기
물리지 않도록
경 고찰

예방 4 씻고, 빨래하고

씻고



진신 샤워 및 진드기 씻기

빨래하고



작업복 분리 세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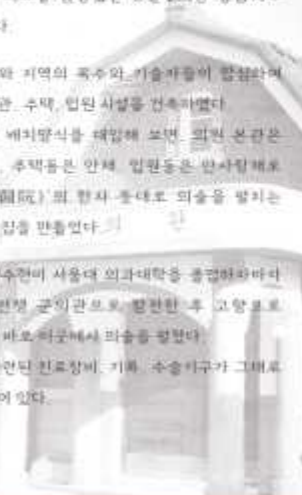
【붙임5 : 정원음악회 홍보물】

**로컬의 승리,
거창근대의료박물관
극대동축문화재 파생의원**

1954년 건립된 근대의원
"차별화된 덕 안본 거창 사람이 버디"라고 할 만큼 자생의원은 한국전쟁 후 거창 및 인근 지역의 의료를 담당했던 유일후러한 종합의료 시설이다.

건축주와 지역의 특수와 기술자들이 합심하여 의원본관, 주택, 입원 시설을 건축하였다. 한옥의 배치양식을 대항해 보면, 의원 본관은 사당채, 주택들은 안채, 입원들은 안사당채로 '의원(醫院)'의 한자 뜻대로 의술을 알리는 하나의 집을 만들었다.

의사 상주권이 사용자 의과대학을 졸업하라마다 6.25 전쟁 공인관으로 방전한 후 고창으로 들어가 바로 이곳에서 의술을 행했다. 이와 관련된 진료장비, 기록, 수술기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거창근대의료박물관

거창근대의료박물관 오시는길



주내 거창군 거창동 시청1길 22 (문의)055-940-6747

• 차량종자 •
거창천동시장 금영주차장 (거창군 거창읍 갈매로 159-111)
거창일반주차장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487-11)



스도리가 있는 정오

2023
**근대의료박물관
정원음악회**



2023. 4. 17(화) - 4. 28(리)
12:10-12:50
거창근대의료박물관 휴일

거창군

2023 근대의료박물관 정원음악회

▶ 2023년 4월 17일 공연

민들레

- 대표자 장성배
- 구성원 10명
- 소 개 거창군청 공무원으로 구성, 2005년 최초 결성



거창올리스밴드

- 대표자 홍선귀
- 구성원 10명
- 소 개 음악에 취미가 있는 경찰관들로 구성, 음악봉사활동 음악동아리



기타스토리

- 대표자 임동현
- 구성원 10명
- 소 개 2019년에 결성된 거창군 직장인 머쿠스틱 통기타 밴드



거창 조이색소폰

- 대표자 이선우
- 구성원 31명
- 소 개 지역문화와 예술 발전을 위해 공연을 펼치는 색소폰 공연단



음치박치

- 대표자 조경주
- 구성원 21명
- 소 개 2006년부터 활동한 직장인 7080 기타동아리



거창 버스킹

- 대표자 정동명
- 구성원 5명
- 소 개 통기타와 오카리나, 하모니카 연주하는 전문 음악인 모임



거창 국악단

- 대표자 유금순
- 구성원 7명
- 소 개 수순대 주팔 전통음악 공연 등 지역 맞춤형 공연을 기획하는 국악단



NONO의 전통악기(통기타, 하모니카, 오카리나) 연주

스도리가 있는 정오

행복복지담당

1. 경로위안행사 마을별 일정 추진 계획 제출 [담당 : 김태림 940-7723]

- 기 간 : 2023. 4. 21.(금)까지
- 대 상 : 관내 20개소 경로당
- 내 용
 - ‘어버이날’ 을 맞이하여 경로위안행사 추진
 - 읍면단위 전체행사를 자제하고 마을별 소규모로 진행
- 제출서식 : 마을 별 계획

마을명	일시	장소	인원	행사내용	주최	비고
예시	2023.5.7.(일) 12:00	마을회관	30명	경로위안잔치	마을회	

- 협조사항 : 마을별 행사 일정 등 계획 제출

2. 2023년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스마트워치 지원사업 [담당 : 김태림 940-7723]

-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스마트 워치 가입비(500,000원 이하), 1인, 1대
 - 약정기간 : 24개월(2년) / 기본요금(월 이용료)은 본인 부담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시 가입 해지자 : 전액환수

3. 2023년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안내 [담당 : 박진수 940-7721]

- 신청기간 : 2023. 2. 13. ~ 2023. 4. 28.
-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
- 사용기간 : 2023. 2. 13. ~ 11. 30.
- 지원내용 : 도서 및 학습물품 구입, 온라인 강의 수강에 사용(10만원)

4. 2023년 문화누리카드 신청 안내 [담당 : 박진수 940-7721]

- 신청기간 : 2023. 2. 1. ~ 2023. 11. 30.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중 2017. 12. 31.일 이전 출생자
 - ※ 22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 자동재충전(신청불필요)
 - ※ 자동재충전 :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11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 사용기간 : 카드 발급일 ~ 2023.12.31.(일)
- 사용가능 업종 및 품목 : 【붙임1】
- 관내 가맹점 등록현황 : 【붙임2】 , 【붙임3】

5.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추가인상 안내

[담당 : 박진수 940-7721]

○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액 추가인상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변경 전	하절기	29,600	44,200	65,500	93,500
	동절기	118,500	159,400	212,500	278,600
	합 계	148,100	203,600	278,000	372,100
변경 후	하절기	29,600	44,200	65,500	93,500
	동절기 (인상액)	248,200 (+124,100)	334,800 (+167,400)	445,400 (+222,700)	583,600 (+291,800)
	합 계	277,800	379,000	510,900	677,100

※ 동절기 사용기간 : 2022. 10. 12. ~ 2023. 4. 30.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인상분은 2월 8일 09시부터 사용가능

6. 「행복이 남하도는 냉장고」 공유냉장고 운영

[담당 : 서현욱 940-7722]

○ 공유냉장고란?

- 이웃과의 음식나눔을 통해 음식물이 필요한 이웃과 정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지역에서 스스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랑 나눔 공유프로젝트

○ 장 소 : 면사무소 1층

○ 이용대상 : 전 면민

○ 사업내용

- 물품기부 및 나눔 : 누구나 식료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하고 지역주민 모두 무료로 이용가능
 - 공유가능 물품 : 과일, 채소 및 식재료, 반찬류, 가공품, 냉동식품, 빵, 간식류 등
 - 공유불가 물품 : 주류, 약품류, 불량식품, 쉽게 변질되는 식품 등

7.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협조

[담당 : 서현욱 : 940-7722]

○ 발굴기간 : 연중

○ 발굴주체 : 복지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각 기관단체, 자원봉사자 등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

- 코로나19등으로 인한 소득감소, 실직, 휴업, 폐업 등 생계곤란가구
- 빚이나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 가구
- 겨울철 전기, 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사는 주거 취약 가구
- 독거 어르신, 장애인, 취약아동 등 돌봄 취약 가구

【붙임1 : 가맹점 등록 가능 업종 및 품목】

대분류	중분류(장르)	소분류	업종 및 품목
문화	도서	도서	도서, 중고도서, 전자책, 만화콘텐츠, 신문 * 쇼핑센터/백화점/마트 내 서점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만 가능
	음악	음악	음반, 음원콘텐츠, 악기(악기부속품)
	영상	영화	영화, 영상콘텐츠(OTT 서비스 등)
		TV	케이블TV, 위성방송
	공연	공연	공연(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미술	전시	전시(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미술품
		공예	공예품, 문구(화방, 문구점), 표구
		사진관	사진촬영, 사진인화
문화체험	문화체험	문화체험(공방, 지자체 문화센터,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온라인취미클래스, 한복대여, VR체험, 드론체험 , 방탈출체험, 유·청소년 직업체험 등	
문화일반	문화일반	결제대행사(PG사)	
관광	교통수단	철도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고속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항공	항공사
		여객선	여객선
		렌터카	렌터카, 전세버스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관광지	관광명소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휴양림/캠핑장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온천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체험관광	지역축제,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테마파크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키즈카페 등) , 민속촌	
	숙박	숙박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체육	스포츠관람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용품	체육사 및 체육용품, 자전거,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체육시설		체육시설	(종목)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레저스포츠 (시설)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붙임2 : 관내 가맹점 등록 현황】

거창군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연번	분류	가맹점명	연락처	주소	비고
1	공예	아트비문구	055-943-0277	거창읍 아림로2길 33 화구문구 아트비문구	
2	공예	개명문구	055-944-3977	거창읍 아림로 47 개명문구	
3	공예	모닝글로리 거창점	055-944-8366	거창읍 아림로 49 모닝글로리	
4	도서	기독교백화점	055-942-7574	거창읍 하동1길 63	
5	도서	덕유문고	055-944-1004	거창읍 거열로 86	
6	도서	책방소문	055-943-9721	거창읍 하동1길 62	
7	도서	홍익서적	010-2576-3295	거창읍 상동길 44	
8	렌터카	거창시민관광	055-945-1320	거창읍 거열로 173	
9	렌터카	(주)베스트렌트카 거창점	055-943-1880	거창읍 창동로 67 대평리세차장	
10	사진관	박상진스튜디오	055-943-4666	거창읍 아림로 60	
11	사진관	내모습사진관	055-944-5680	거창읍 거창대로 65	
12	사진관	새한스튜디오	055-943-8536	거창읍 중앙로1길 7-1	
13	사진관	천일사진관	055-944-6464	거창읍 아림로 31-1	
14	숙박	샵호텔	055944-4845	거창읍 대평4길 28	
15	숙박	WHO	055-944-0050	거창읍 대평5길 51	
16	숙박	파타야호텔	055-942-3289	거창읍 대평4길 45 파타야호텔	
17	숙박	씨에프호텔	055-943-9915	거창읍 대평4길 42 CF호텔	
18	숙박	천오호텔	055-942-5541	거창읍 거창대로3길 11 천오장여관 천오모텔	
19	숙박	씨에스타 펜션	010-5386-6864	위천면 은하리길 10-3	
20	숙박	호텔가조	055-944-0112	가조면 온천길 108-11	
21	숙박	별마중펜션	055-942-5776	북상면 덕유월성로 2181	
22	시외버스	거창버스터미널	1644-2992	거창읍 강남로 236 거창버스터미널	
23	여행사	(주)대성항공여행사	055-945-5700	거창읍 중앙로 135 더데이	

24	여행사	(주)헤럴드여행사	010-3021-0429	거창읍 아림로 60	
25	여행사	거창관광(주)	055-944-7170	거창읍 강양5길 6-1(대동리)	
26	영화	거창롯데시네마	055-942-9503	거창읍 중앙로1길 1프리미어고센상영관 8층	
27	온천	백두산천지온천	055-941-0721	온천길 161 (일부리)	
28	온천	호텔 가조 온천	055-944-0112	가조면 온천길 108-11	
29	음악	제일레코드사	055-943-2740	거창읍 중앙로 124	
30	음악	도레미음향소리사	055-942-5686	거창읍 대동리 782-2	
31	전시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0570-4693-5740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	
32	체육시설	거창국민체육센터	055-945-8701	거창읍 심소정길 39-96	
33	체육시설	동아한테권도장	055-942-7799	거창읍 죽전1길7 1층	
34	체육용품	훈이오토바이	055-942-0199	거창읍 거열로 129	
35	체육용품	거창프로바이크	055-944-0886	거창읍 거열로212 베리웰 거창프로바이크	
36	체육용품	삼천리자전거	055-943-2948	거창읍 아림로 56 삼천리자전거	
37	체육용품	삼천리자전거 거창점	055-944-4630	거창읍 강변로 131	
38	체육용품	알톤자전거	010-2011-8124	거창읍 거영로 166 양지청과 알톤자전거	
39	체험관광	수승대체험휴양마을	055-941-2023	위천면 원학길 410	
40	체험관광	거창허브빌리지	055-943-7523	가조면 지산로 1242 가남정보화 거창허브빌리지	
41	체험관광	곰내미체험마을	055-942-2038	웅양면 화평길 6 곰내미커뮤니티센터	
42	체험관광	참깨비체험휴양마을	055-942-5776	남하면 지산로 727-13	
43	체험관광	월천권역영농조합법인	055-941-2214	거창읍 주곡로 220-14	

【붙임3 : 문화누리카드 참깨비마을】

문화누리카드 참깨비마을 (1주일에 한번 주문 들어갑니다.)					
연번	품목	규격	금액	연락처	비고
1	국수	900그램 / 3개 묶음	10,500원	055-944-0234	
2	슈퍼타이	5.5키로	11,500원		
3	화장지	30개	24,000원		
5	허브바디워시	500ML	20,000원		
6	허브바디로션	500ML			
7	샴푸	950ML	30,000원		
8	컨디셔너	950ML			
9	식용유	1.5L	8,000원		
10	각휴지+물휴지	각 1개씩	6,000원		

1. 2023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담당 : 김태현 940-7732)

농촌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3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3. 11. 30.(목)까지
 - * 신청기준 :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 신청 가능
- 사업기간 : 2023. 12. 31.(연장시는 2024. 8. 31.)까지 주택건축 및 대출 완료
 - * 2023. 12. 15.까지 착공신고 또는 토지구입비 대출 완료 시 연장 가능
-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 귀촌인
- 사업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인 단독주택
- 사업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100%) 지원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신축) 2억원, (증축·대수선) 1억원 * 주택개량 소요비용 이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2%고정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사업혜택 :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및 측량 수수료 30% 감면 등

2. 황강취수장 설치사업 반대 홍보

(담당 : 김태현 940-7732)

황강취수장 설치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 2. 28.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을 위해 반대 홍보자료를 안내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설치위치 : 경남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적중취수장 인근)
 - * 거창군 남하면 가천교에서 수계거리로 약 65km 하류에 위치
 - 공급물량 : 45만톤/일(황강취수장)
 - * 황강 하천복류수(45만톤/일)와 창녕 강변여과수(45만톤/일)를 취수하여 동부경남(창원, 김해, 양산, 함안 48만톤) 및 부산(42만톤)에 공급
- 거창군민의 입장
 - 합천댐은 거창물이 전량 유입되어 황강 취수원으로 활용되므로 거창군 동의 필요
 - 상수원 관리를 위해 상류지역 규제 강화 불가피
- 홍보자료 : **【붙임 1】** 참조

3.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홍보

[담당 : 김태현 940-7732]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 방안으로 2009년부터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를 실시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탄소중립포인트제란?
 - 가정·상업 등에 사용하는 전기가스상수도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로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상품권, 현금 등)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 산정방법 : 참여 시점으로부터 관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 대비 감축률
- 지급기준

구분	인센티브 지급액			지급방법
	5 ~10% 미만 절감	10~15% 미만 절감	15% 이상 절감	
전기	5,000p	10,000p	15,000p	거창사랑상품권 현금(계좌이체) 그린카드 포인트
상수도	750p	1,500p	2,000p	
도시가스	3,000p	6,000p	8,000p	

- 지급횟수 : 연 2회(상·하반기 포인트 산정 후 6월, 12월 인센티브 지급)
- 가입방법 : 온라인 직접가입(<https://cpoint.or.kr>) 또는 서면 참여신청서 작성 제출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 032-590-3448, 3432, 3446
- 홍보자료 : **【붙임 2】** 참조

4. 2023년 상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 안내

[담당 : 김태현 940-7732]

세원 확보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상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현재 지방세를 체납 중인 주민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기간 : 2023. 3. ~ 6.
- 현재 체납현황 : 234건 / 11,11,433,350원 (2023. 4. 13. 기준)
- 협조사항 : 마을방송 통한 체납자 납부 독려
- 마을방송문(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군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고장 발전에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재원으로 많은 분들이 성실하게 납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바쁜 일상 속에 미처 납부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면사무소에 체납내역 확인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홍보

[담당 : 신하식 940-7731]

하수관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배수설비 관리 방법 및 오물분쇄기 사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사항 : 【붙임 3】 참조

6.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안내

[담당 : 김태현 940-7732]

2023년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피해방지단 포획 활동 시 마을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농작물·인명피해 발생 시 즉각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23. 4. 1. ~ 11. 30.
- 포획지역 : 거창군 전역
- 포획대상 :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 피해방지단 명단

조별	담당 구역	성명	자격요건			전화번호
			수렵면허번호	활동시간	소속단체	
1조	거창 남하마리 (8)	강동운	2020-13	야	야생생물관리협회	010-8755-7021
		강위향	2021-3	야	경남수렵협회	010-9280-0092
		김창중	2022-32	야	전국참여연대	010-3838-7169
		박중성	2021-11	주	경남수렵협회	010-3881-7920
		유동만	2022-26	주	경남참여연대	010-8588-6111
		윤삼효	2021-14	주	경남수렵협회	010-2833-7600
		전현진	2018-20	주	야생생물관리협회	010-2570-1737
		하철용	2021-13	야	-	010-5331-6266

7. 거창군 120자원봉사대 가입 안내

[담당 : 김태현 940-7732]

거창군 120자원봉사대는 1997년 발족 이래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매월 1~2회씩 먼 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을 진행하는 등 많은 봉사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단체이지만 회원의 수가 감소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규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0자원봉사대 현황
 - 회원 수 : 30명
 - 봉사분야 : 농기계, 전기, 보일러, 의료, 이미용 가전, 기타 봉사활동 등
 - 주요활동 : 순회봉사활동(월1~2회), 사랑의 집 짓기 사업
- 가입문의 : 안전총괄과 민방위담당(☎055-940-3663)

8. 거창창포원 주민 참여정원 조성 참가자 모집 안내 [담당 : 김태현 940-7732]

거창창포원 내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2023년 거창창포원 주민 참여정원」 조성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3. 4. 21.(금) 16시까지
- 조성장소 : 거창창포원 일원
- 공고부문 : 5개팀/단체(3명이상)
- 공모주제 : 봄날의 정원
- 지원금 : 1개소당 1,500,000원
-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거창창포원 행정실)
- 홍보물 : 【붙임 4】 참조

9. 각종 건설공사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 요청 [담당 : 신하식 940-7731]

각종 건설공사 시 향후 발생 우려가 있는 분쟁 해소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유지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 징구 요청드립니다.

- 협조사항
 - 각종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락서 징구
 - 기존 승낙된 토지에 대하여 추가 공사 시 토지소유자에게 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 요청
 - 토지사용 승낙서 미제출 시 사업추진 불가
- 승낙서 양식 : 【붙임 5】 참조

10. 2023년 영농기 대비 농업용수 확보 협조 [담당 : 신하식 940-7731]

- 목적 : 겨울철 가뭄 장기화에 따른 영농기 물 부족 우려 지역 사전점검 및 용수 공급시설(관정, 양수장 등)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 협조사항
 - 저수지 물 가두기 추진 및 시설 개보수(누수 및 인입수로 정비 등) 대상현황 파악
 - 수리시설(관정, 양수장 등) 점검 후 가동 가능 여부 파악하여 정비가 필요할 시 개발담당으로 신고 조치

11. 거창매립장 생활폐기물 반입 시 유의사항 안내 (담당 : 김태현 940-7732)

거창매립장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때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생활폐기물(목재, 고철, 플라스틱 등) 반입 시에 품목별로 분리하여 반입
 - ※ 공사장(사업장) 폐기물과 혼합하여 반입하는 경우 반입 거부될 수 있음
 - 마을 대청소 등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반입 시 면사무소 사전 협조

12.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운동 안내 (담당 : 김태현 940-7732)

환경오염 예방과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운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수거기간 : 2023. 2. 20.(월) ~ 4. 30.(일)
- 수거품목 : 영농폐비닐, 농약용기류, 과수재배용 반사필름, '농약' 표기 없는 유사용기
- 수거품목별 보상금액 및 수거장소 【붙임 4】 참조

수거품목		수거보상금액 (원/kg)		수거장소
		거창군	한국환경공단	
폐비닐	A등급	180	무상수거	* 한국환경공단 거창사업소 (☎ 943-3072) * 민간 위탁 수거사업자 (표상년 : 010-4580-6593) * 마을내 공동집하장에 모아 일제수거요청 또는 개인 직접 반입(10kg이상, 사전연락)
	B등급	130		
	C등급	100		
농약병류	유리병	130	300	
	플라스틱병	130	1,600	
	봉지	130	3,680	
과수재배용 반사필름		150	수거안함	거창군 매립장으로 직접 반입
'농약' 표기가 없는 유사용기 (착색제, 성장촉진·영양제, 친환 경유기농자재 등)		130	수거안함	

황강취수장, 미래세대에 대한 재앙입니다.

1 사업개요 (황강취수장 설치사업)

- 설치위치 : 경남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적중취수장 인근)
 - * 거창군 남하면 가천교에서 수계거리로 약 65km 하류에 위치
- 공급물량 : 45만톤/일(황강취수장)
 - * 황강 하천복류수(45만톤/일)와 창녕 강변여과수(45만톤/일)를 취수하여 동부경남(창원, 김해, 양산, 함안 48만톤) 및 부산(42만톤)에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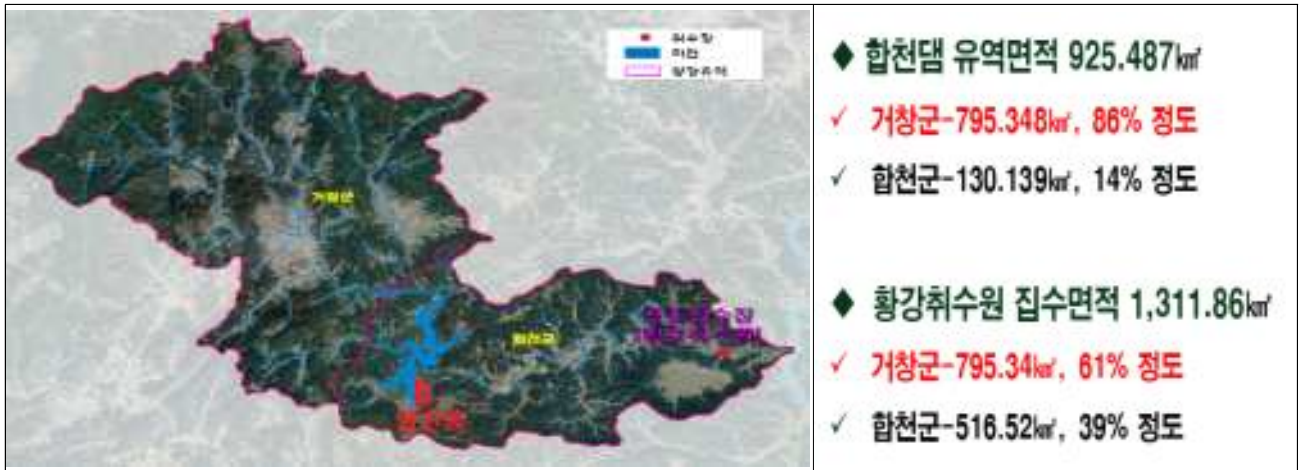
2 그간 추진경과

- 2021. 6. 21. : ‘거창군 황강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투쟁위원회’ 발족 및 결의대회
- 2021. 6. 24. : 황강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집회 개최(세종시 환경부청사 앞)
- 2021. 6. 24. :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조건부 의결)
- 2022. 6. 30. : 재정사업평가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기재부
- 2022. 7. 25. :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현지 의정 활동 참석(거창군수)
 - 황강취수장 설치의 부당성 설명 및 ‘설치사업 중단’ 건의문 전달
- 2022. 7. 27. : 거창군의회 ‘황강취수장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문’ 채택
- 2022. 11. 2. : 환경부, 민관협의체 구성
 - (거창군 위원 제외, 회의 참석 및 의견 개진은 가능)
- 2023. 2. 28. :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발족 및 결의대회
- 2023. 3. 23. : 「황강광역취수장 설치사업 중단 촉구 결의문」 관계기관 전달
- 2023. 3. 31. : 범대위 실무추진단 환경부 방문
 - 황강취수장 설치사업 중단 촉구(결의문 전달), 거창군 피해지역 포함 건의

3 거창군민의 입장

- **합천댐은 거창물이 전량 유입되어 황강 취수원으로 활용**
 - 합천댐 유역면적은 925.487㎢이며, 거창군은 795.348㎢로 85.9%를 차지하고 있고 합천군은 130.139㎢로 14.1%에 해당됨.
 - 거창군은 합천댐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창에서 발생하는 물이 전량 합천댐으로 유입되고 있어 댐 관리상 직접 영향지역임.

- 황강 하류에 취수원이 설치되지만 실질적인 용수 공급원은 상류에 위치한 합천댐에서 대부분의 수량을 공급받게 됨.
- 따라서, 거창군은 황강취수장 개발과 관련 직접 당사자임.
- 아울러, 황강취수장 설치사업은 낙동강 본류의 수질이 악화되어 윗물이 맑은 지류로 취수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거창군민의 동의가 최우선 되어야 함.



□ 상수원 관리를 위해 상류지역 규제 강화 불가피

- 황강취수장에서 일일 45만톤을 취수하기 위해서는 합천댐의 저수율이 높은 수위를 유지해야 가능함.
 - 댐 체류시간 늘어나 하절기 잦은 녹조 발생으로 하류 취수원의 이취미(물에 맛 또는 냄새가 남)에 영향을 주게되면, 그 원인을 댐 상류 지역의 사업장, 생활용수, 축산시설 등에서 원인을 찾게 됨.(보이지 않는 규제 시작)
 - 황강 취수, 물부족(댐)→댐수위 상승→안개발생, 녹조증식(악순환)
- 합천댐 준공 이후 안개 발생 빈도가 높아져서 농업생산성 저하로 농업인의 피해 민원이 커지고 있음.
 - 상시 안개 발생 가능성 증가로 농업 생산성 감소와 교통사고 증가
- 황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취수원 상류 지역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고, 맑은 물 확보를 위한 댐운영 방식 변화로 상류 지역 오염원 관리 강화될 것임.
 - 수도권의 경우 취수원 상류에 대한 상수원 규제 및 수변구역 지정 등으로 수질 보전 및 관리
 - 취수 원수 관리를 위해서는 직·간접적인 환경 규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 (주민동향) 각종 환경 규제로 신규 공장 유치, 산업단지 조성 어려움 및 기존 제조업체 타 지역 이탈, 축산업 위축도 우려함.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붙임 2 : 탄소중립포인트제 홍보자료】

에너지 절약하고 인센티브 받자!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 “탄소포인트제”

1 참여조건

참여자의 거주사실에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부여된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2 참여대상

- 개인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단지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학교 및 일반건물의 공용부문 (기류동 및 산업용 천막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

3 포인트 부여

가정 또는 단지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 지급 시기 연간 2회(하월, 12월) 지급되며 1포인트당 최대 2원 지급 (지자체별 상이)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종류 :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등

4 참여시 유의사항

- 요금고지서 별도 납부시 : 전기 전기요금고지서 또는 주민센터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및 입력, 상수도 수도요금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물기번호(20자리번호) 확인 및 입력, 도시가스 도시가스요금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및 입력, 탄소포인트 누리집에서 지자체별 담당부서 연락처 확인 가능
- 관리비에 포함 납부시 : 주소 일제시 고객번호 자동 입력

5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포인트제 누리집(point.or.kr)에서 가입(PC 및 모바일)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6 탄소포인트 지급 기준 개정 내용

- 개인(일반가정)
 - 유지인센티브 지급 기준 완화 (최저 연속 감축 -3회 연속 감축)
 - 표준사용량 인센티브 신설 (가주 연적 세대 수를 고려한 세대당 사용량)
- Part 1 감축 인센티브 (기준과 동일)

감축률 (과전~과전)	전기	수도	가스
0%~10%	5,000p	700p	3,000p
10%~20%	10,000p	1,500p	6,000p
20%~	15,000p	2,000p	8,000p
- Part 2 유지 인센티브 (4회 연속) 2회 연속 감축
 - 2회 연속 감축 인센티브 발생후 3회 초과 ~ 3% 미만 감축을 달성시

감축률 (과전~과전)	전기	수도	가스
0%~5%	3,000p	450p	1,800p
- Part 3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신설)

세대당사용량	전기	수도	가스
표준사용량 10% 이하	5,000p	700p	3,000p
- 상업시설 모든 인센티브 유형 기준의 4배로 상향 (최대 10만 원만 ~ 최대 4만 원만)
 - Part 1 감축 인센티브

감축률 (과전~과전)	전기	수도	가스
0%~10%	9,000p > 20,000p	490p > 3,000p	9,000p > 12,000p
10%~20%	18,000p > 40,000p	980p > 6,000p	18,000p > 24,000p
20%~	27,000p > 60,000p	1,470p > 9,000p	27,000p > 36,000p
 - Part 2 유지 인센티브
 - 4회 연속 인센티브 발생후 3회 초과 ~ 3% 미만 감축을 달성시

감축률 (과전~과전)	전기	수도	가스
0%~5%	9,000p > 12,000p	490p > 1,800p	1,800p > 2,700p

문의전화 032-590-3468, 3432, 3446

배수설비는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 배수설비 설치하는 이렇게



○ 배수설비 유지관리 청소

<p>안도!</p> <p>변기에 칫솔, 담배꽂초 등 이물질 투입 금지</p> <p>음식물찌꺼기는 거름망으로 분리하여 배출</p>	<p>쓰레기 투기 금지!</p> <p>나 쓰레기투기 아니야!</p> <p>오수받이에는 쓰레기나 오물 투기 금지</p>	<p>악취, 병충해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p> <p>물욕을 하고 나니~</p> <p>누가? 배수설치 설치자 언제? 일반가정 월 1회, 영업장 월 2회 어떻게? 막대기나 소제도구 사용</p>
--	--	---

○ 주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p>● 청소목적 외 오수받이 뚜껑 개폐금지</p> <p>오수받이로 빗물이 들어가 하수처리장에 피해가 발생합니다.</p> <p>들어가지!</p>	<p>● 배란다에 세탁기 설치는 금물</p> <p>배란다 배수구는 빗물관에 연결되어 있어 세탁오수가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p>	<p>● 물티슈 투입금지</p>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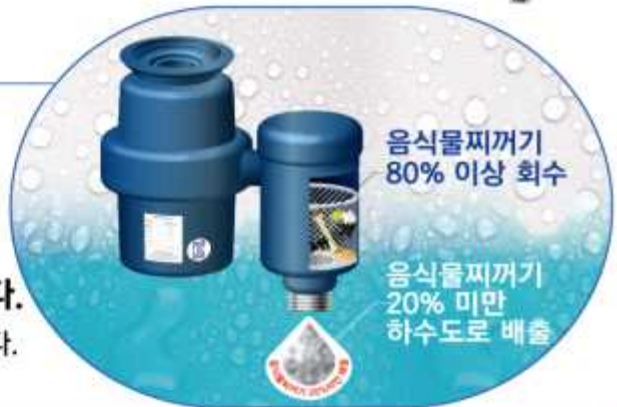
※ 거창군에서는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렴콜 940-3060)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적합 제품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인증제품은 www.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제품

분쇄부

회수통 제거

분쇄부 회수통

분쇄부에서 연결관이 회수통을 통과해 주방오수관에 직접 연결

분쇄부 회수통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정산 불량

내부 거름망 훼손

음식물찌꺼기가 100% 하수도에 배출되면 우리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관로 막힘 | 악취 발생



하수 처리장 문제 발생



하천 수질 악화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거창군에서는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렴콜 940-3060)

【붙임 4 : 창포원 주민참여정원 조성 참가자 모집 포스터】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2023 상반기 주민 참여정원 조성 참가자 모집

- 주 제 : 봄날의 정원
- 조성장소 : 거창창포원 일원(면적 6m², 직사각형 화단)
- 참가자격 : 거창군민 누구나
 - 모집팀 : 5개팀 / 3인 이상 단체
- 접수방법
 - 접수일자 : 2023. 4. 7.(금) ~ 4. 14.(금) 16:00까지
 - 접 수 처 : 이메일(happymys@korea.kr)
방문접수(거창창포원 행정실)
- 선발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선발방법 : 서류심사
 - 합격자 발표 : 2023. 4. 20.(목) * 심사 및 발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문 의
 - 참가신청서 및 모집요강 : 거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문의전화 : 거창군 환경과 창포원시설담당(055-940-8872)

주최 : 거창군청 환경과

【붙임 5 : 토지사용 승낙서】

토지사용 승낙서

▶ 토지의 표시

토지의 소재			지목	지적 (㎡)	예상편입 면적(㎡)	소유자	
읍면	리	번지				주소	성명

※ 설계 완료 후 편입면적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명

▶ 사용자 : 거창군수

▶ 사용기간 : 시설물 존치 시 까지

▶ 본인은 사업 시행에 따른 편입부분에 대하여 무상 사용함을 승낙하고 일체의 이의제기(원상복구, 사용료요구, 타인의 이용제한, 법적분쟁 등)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소유권 이전(상속, 증여, 매매, 보전등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승계인에게 본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을 설명하고 권리 승계 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토지사용 승낙자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거창군수 귀하

【붙임 6 :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안내자료】

농약과 식물기생충 농약제조 잔여물 위한
영농폐기물(페비날, 페농약용기류) 배출안내

폐농약용기 수거 가능 품목

살충제 : 비망기온, 방풍기	농약용기 : 비망기온, 방풍기
살균제 : 비망기온, 방풍기	농약용기 : 비망기온, 방풍기
비망기온 : 비망기온, 방풍기	비망기온 : 비망기온, 방풍기
방풍기 : 비망기온, 방풍기	방풍기 : 비망기온, 방풍기

폐농약용기 분리배출 방법

- 농약(리모스)을 용기에서 완전히 분리한 다음, 뚜껑 등 1/3 이상을 파내고 배출한다.
- 농약이 들어있는 용기는 농약이 묻지 않는 수거 용기에 분리배출한다.
- 농약용기(리모스)를 분리한 후, 용기에서 농약이 완전히 분리된 후, 뚜껑 등 1/3 이상을 파내고 배출한다.

과제이고 식물기생충 농약제조 잔여물 위한
영농폐기물(페비날, 페농약용기류) 배출안내

수거 가능 품목

수거 불가 품목(EPPI 대상 품목 등)

수거 불가 품목은 지역별 수거 불가능하다. 영농폐기물처리업체(구비)에 문의한다.

자랑용 물기 품목

미처리 대상 품목

안전한 수거 방법

EPPI 대상 품목 수거 안내

내선국농수산물청(농수산식품안전관리원) 011-770-4500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환경조성을 위한
영농폐기물(페비날, 페농약용기류) 분리배출 안내

바로 수거 문의
대표번호 1661-6620

www.농사후.kr

농약·수거 안내 홈페이지

농약·수거 안내 홈페이지

농약·수거 안내 홈페이지

한국환경공단
배출·수거 안내

농약이 강하게 묻은 후, 폐농약용기류 배출시 지열탕 및 끓여 물기 제거
다음 용기에 배출한 후에도 철저한 관리에 의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이로 차등되고자 농산물 생산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영농폐기물(페비날, 페농약용기류) 배출 시 주의사항

농약용기류(페비날, 페농약용기류) 배출 시 주의사항

영농폐기물 수거 안내

문의처

농약용기류(페비날, 페농약용기류) 배출 시 주의사항

구분	대상	수거방법
농약	농약 잔류물이 소량인 경우	수거용 200kg (1차)
잔류물	농약 잔류물이 많은 경우	농약용기류 200kg (1차)
사물	농약 잔류물 없음	수거용 200kg (1차)
합계	농약 잔류물 없음	수거용 200kg (1차)
합계	농약 잔류물 있음	수거용 200kg (1차)

영농폐기물(페비날, 페농약용기류) 분리배출 종류도

01. 영농폐기물(대용)

02. 농약용기류(중용)

03. 수거용(중용)

04. 잔류물(중용)

05. 수거비 지급(지자체, 한국환경공단)

06. 처리(대용) 및 처리업체

구분	대상	수거방법
농약	농약 잔류물이 소량인 경우	수거용 200kg (1차)
잔류물	농약 잔류물이 많은 경우	농약용기류 200kg (1차)
사물	농약 잔류물 없음	수거용 200kg (1차)
합계	농약 잔류물 없음	수거용 200kg (1차)
합계	농약 잔류물 있음	수거용 200kg (1차)

1. 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지원가구 신청 및 추천 안내

[담당 : 김필재 940-7745]

- 신청기한 : 2023. 4. 17.(월) ~ 9. 27(수). 까지
- 지원내용 : 단열·창호·바닥(건식 온수패널)시공, 보일러(가스, 기름) 설치
- 지원대상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가구)
- 지원제외
 - 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매입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소유주택 거주자
 - 무허가 주택 거주자는 지원불가
- 사업예산 : 78,262백만원/ 가구 : 평균 242만원이내 지원, 시설 : 1,100만원이내 지원
- 신청장소 : 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2. 2023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사회복지시설)수요조사 안내

[담당 : 김필재 940-7745]

- 신청기한 : 2023. 5. 4.(목)까지
- 제출기관
 - 한국 LPG산업협회(☎070-7668-6453)
 - 한국 LP가스판매협회 중앙회(☎02-555-3114)
- 지원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내 사회복지 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구체적 대상은 **【붙임 1】** 참조
-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공급 배관 등 LPG공급 시설 설치비용 지원
- 지원조건 : 사회복지시설의 LPG공급설비(정부80%, 사용자 20%)
 - * 사용자(사회복지시설) 자부담금(20%)중 희망충전기금에서 10%지원
 - * 사회복지시설 자부담금 : 약 1백원 내외(시공비에 따라 변경가능)
- 가스공급설비 소유권 : 사회복지시설이 LPG소형저장탱크 등 공급설비 소유권을 가지며 가스공급자를 직접 선정

3. 2023년 축산발전사업 추진계획(2차)알림

[담당 : 김필재 940-7745]

- 신청기한 : 2023. 4. 28.(금)까지
- 사업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업내용	비고
1	축사 전기안전시설 보수 지원	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축사농가 안전 정기점검 검사 결과 수리 및 사전예방차원 수리보수비 지원 ○ 사업량 : 3개소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단가 : 3백만원/개소 	자부담 50%
2	한우농가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3,45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왕겨)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된 관내 한우사육 농가 ○ 사업량 : 3,450톤 ○ 지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톱밥 : 190원/kg - 왕겨 : 110원/kg 	자부담 50%

4. 2023년 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안내

[담당 : 김필재 940-7745]

- 모집기간 : 2023. 4. 14.(금) ~ 4. 28.(금)까지
- 교육기간 : 2023. 5. 10. ~ 7. 12.(10회)/매주 수요일 14:00 ~ 18:00
- 장 소 : 거창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 2층 교육장
- 모집인원 : 40명 정도
- 교육대상
 - 자가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창업 하고자 하는 관내 농업인
 - 농식품가공에 관심이 있고 거창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20대 예비 농업인

5. 2023년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 일제접종 시행 알림

(담당 : 김필재 945-7745)

- 접종기간 : 2023. 4. 24.(월) ~ 5. 10.(수) / 12일간
- 접종대상 : 남하면 관내 소·염소 접종희망 농가 81호(1944두)
- 접종방법 : 접종반지원 및 자가접종
 - 접종지원 : 소규모 농가 및 접종반 지원 신청한 전업농(71호 1,593두)
 - 자가접종 : 접종반 지원 신청 안한 전업농(2호 169두)
 - 염소농가 : 거창군 염소협회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 추진(8호 182두)
- 당부사항
 - 전업농가 접종시 두당 2,000원(자부담금 지급 철회)
 - 각 마을이장 일제접종 시작 전 마을방송으로 홍보협조 **【붙임 2】**

6. 유기·유실동물 예방 및 동물 등록 홍보 협조

(담당 : 김필재 945-7745)

- 현 상 황 : 최근 동물보호센터에 목줄 및 리드선 착용 등의 소유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려견들이 많이 입소되고 있음
- 확인방법 : 동물을 유실한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및 거창군청 홈페이지의 공고를 통해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실반려견) 확인가능 **【붙임 3】** 참조
 - *공고기간 10일 내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가능
- 과 태 료 : 동물을 고의로 유기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46 조에 의거 유기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7. 상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 알림

(담당 : 김필재 945-7745)

- 추진기간 : 2023. 4. 3.(월) ~ 4. 28.(금)
- 단속대상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
- 신고센터 : 거창군 경제기업과(☎ 055-940-3680)
- 단 속 반 : 2개조 7명(총괄반장 : 경제기업과장)
- 기타사항 : **【붙임 4】** 참조

8. 2024.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청 홍보 및 수요조사 실시 안내

(담당 : 김필재 945-7745)

- 대 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 및 건물
 ※ 무허가 건축물 및 미등기 건축물은 신청 불가
- 대상지역 : 12개 읍·면
- 신청기간 : 2023년 말까지
- 사업내용 :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3kW 또는 태양열 6㎡ 설비 설치
- 가구당 지원금액(2023년 단가기준)

(단위 : 천원)

신재생 에너지원	구분	설치용량	총사업비	국비	군비	자부담	비고
태양광	주택	3kW	5,163	2,424	1,879	860	자부담 17%
	건물		5,490	2,580	2,010	900	자부담 16%
태양열	주택	6㎡(온수기)	6,151	4,027	1,174	950	자부담 15%
	건물		6,286	3,207	2,089	990	자부담 16%

- 신청방법 : 신청가구 수요조사 후 참여기업을 통해 신청
- 기대효과 : 가구당 75~80만원/년 전기요금(태양광) 및 유류비(태양열) 절감
- 수요조사 안내
 - 방문시기 / 방문자 : 4월 3일 ~ 4월 28일 / 경제교통과 에너지담당주사 등
 - 주요내용 : (필요시) 해당 면 마을이장 직접 방문을 통해 사업설명 및 사업 신청 독려
- 참여업체 : (주)일렉 055-285-0630

9.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안내

(담당 : 김필재 945-7745)

-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 기 간 : 2023년. 4. 6. ~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 종사자
- 명령내용 : **【붙임 5】** 참조
- 문의사항 : 거창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담당(☎055-940-8140)

10. 2023년도 희망불빛 지원사업 신청안내

(담당 : 김필재 945-7745)

- 사업기간 : 2023. 2. ~ 2023. 12.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기존 저효율 일반 조명등을 고효율 조명기기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주택소유자로 2022년 1월 1일 이후 ~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창군 관내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구)
 - 일반가구 : 신혼·출산·전입·다자녀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가구
 - 신혼가구 : 기준일로부터 ~ 현재까지 결혼한 신혼가구
 - 출산세대 : 2022년도 이후 출산세대
 - 전입세대 : 세대주 기준 전입 6개월 이상인 자(귀농 귀촌인 경우 입증자료 첨부)
 - 다 자 녀 : 2023년 현재 주민등록상 20세미만 3자녀 이상 등록된 가구
- 지원요건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의[별표]에서 규정한 『단독 및 공동주택』
 - 방, 주방, 거실 등을 고효율 LED조명등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가구
- 지원내용 : 사용 시간이 많고 전력 소비가 큰 방, 거실, 부엌 3개소에 고효율기자재(KC 및 KS포함)로 인증을 받은 LED등 또는 A/S기간 3년 이상 보증되는 LED(대기업 제품 포함) 설치비(자재비 포함) 일부 및 전액
- 지원금액
 - 일반가구 : 설치비의 50%(최대 400천원)
 - 신혼·출산·전입·다자녀가구 : 설치비의 100%(최대 800천원, 단 초과금액은 자부담)

용도별	등 구조	등수	시장가격	총사업비	보 조	비고
계		6등		800,000원	800,000원	
방 등	36W x 3개	3등	112,000원	336,000원	336,000원	
주방등	55W x 2개	2등	112,000원	224,000원	224,000원	
거실등	55W x 4개	1등	240,000원	240,000원	240,000원	

○ 문 의 : 거창군청 경제기업과(☎055-940-3712)

11.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홍보

[담당 : 김필재 945-7745]

○ 등록대상

축산관계자	세부 사항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고용인, 수의·축산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학계·축산단체 종사 수의사(수의학·축산학·동물자원학 전공 교수·강사·대학원생, 축산단체·동물원·국립생태원에 고용된 자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사 및 수의·축산 분야 직원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자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집유업자 및 원유수집 기사
도축장의 종사자	

* 동거가족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

※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홈페이지(<https://eminwon.qja.gok.kr/eminwon/selfNotify/mainSelfNotify.jsp>)에서 축산관계자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제외요청 시 사군 또는 검역본부 ARS(☎1670-2870)에 개별 신청해야함.

○ 등록방법 : 【붙임 6】 참조

12.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기간 홍보

[담당 : 김필재 945-7745]

○ 추진일정

- 관련 협회, 업계, 축산차량 소유자 대상 사전홍보 실시 : 4.1 ~ 4.30.
-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GPS 장착)기간 운영 : 5.1 ~ 6.30.
-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 강화(과태료 부과) : 2023. 7.1. ~

○ 참고자료 : 【붙임 7】 참조

13.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안내 [담당 : 정화영 940-7742]

○ 내 용

구분	정규교육 (대면, 온라인)	간편교육		비고
		모바일교육	자동 전화교육	
교육 대상	신규 신청자, 전년도 감액자 ※ 모든 농업인 수강 가능	일반 농업인 ※ 신규 신청자, 전년도 감액자 수강 불가	70세 이상 농업인 ※ 정규, 모바일 교육대상자 수강 불가	
교육 방법	농업교육포털 (https://agriedu.net/) 접속	- 교육 대상자 휴대전화로 접속 주소(URL) 전송 - 주소(URL) 접속 후, 영상 시청	- 신청대상자 교육전화 발신 - 5분간 전화 청취 ※ 걸려 온 전화를 받지 못했거나, 끝가지 못 들은 경우, 1644-3656으로 다시 전화하여 재수강	
문의처	온라인교육 콜센터 (☎ 1811-8656)	온라인교육 콜센터 (☎ 1811-865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콜센터(☎ 1644-8778)	

○ 홍 보 물 : 【붙임 8】 교육안내문 참고

14. 20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 : 정화영 940-7742]

○ 신청기간 : 2023. 2. 1.(수) ~ 6. 23.(금)

○ 신청대상

- 1순위 : '22년 벼 재배 농지 중 '23년 신규 타작물 전환 농지(조사료 제외)
- 2순위 : '22년도에 벼에서 타작물로 신규전환 후, '23년도 계속 타작물 재배농지
단, 22년 벼 재배농지 중 23년 신규 조사료 재배농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 필지 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면적 및 상한
면적 제한 없음. 단, 비농업인은 주말체험영농으로 1,000미만
신청 가능

○ 지원단가(변경)

구분	일반작물	풋거름 작물	두류	가루쌀	휴경	하계 조사료	비고
단가 (천원/ha)	1,500	1,500	1,500	1,500	1,500	5,300	

※ 하계조사료 : '21년 벼 재배농지 중 '22년 조사료 재배농지로 '22년 타작물

15. 2023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추진 안내

[담당 : 정화영 940-7742]

- 신청기한 : 2023. 5. 31.(수)까지
- 대 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법인
 - '22년 감축협약에 참여한 경우(하계조사료 포함)
 - '22년 벼를 재배한 논에 '23년 타작물(하계조사료 제외) 재배 또는 휴경 등을 계획하는 경우
-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1ha 기준 300포대 농가별 배정)
 - 농식품부 타작물 재배 관련 사업 지원 우대 등
- 내 용 :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체결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16. 2023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안내

[담당 : 정화영 940-7742]

- 내 용

품목	가입기간	가입처	비고
인삼	2023. 4. 3.(월) ~ 5. 26.(금)	관내 지역농협	
밤, 대추	2023. 4. 17.(월) ~ 5. 12.(금)		
고추	2023. 4. 17.(월) ~ 5. 19.(금)		
옥수수	2023. 4. 17.(월) ~ 6. 9.(금)		

- 가입문의 : NH농협 손해보험(☎ 1644-8900)

17. `24~`25년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공모사업 안내

[담당 : 정화영 940-7742]

- 신청기간 : 2023. 6. 19.(월) ~ 6. 30.(금)
- 사업기간 : 2024. 1월 ~ 2025. 12월(2년)
- 대 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비율 :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 내 용

구분	지원규모	내용	비고
스마트팜 온실 신축	0.3~2ha	복합환경제어, ICT 등을 포함한 연동온실신축(철골, 비닐)	
스마트팜 온실 개축	0.2ha이상	기존 온실을 스마트팜 연동온실로 개축	

- 접수문의 :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 940-8234)

18. 2023년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담당 : 정화영 940-7742]

○ 신청기한 : 2023. 4. 26.(수)까지

○ 내 용

사업명	사업대상	지원비율	내용	비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지원	건고추용 고추재배 희망 농업인 등	보조 50% 자부담 50%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시설원에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 화훼류 재배농가 등	보조 55% 자부담 45%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	
특용작물(버섯약용작물 등) 시설현대화 지원	버섯·녹차·약용작물 등 특용작물 재배 농업인 등	보조 50% 자부담 50%	특용작물 재배 관련 재배사 개·보수, 기기구입 및 교체	
경남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 시범	경남 육성 신품종 딸기(금살) 재배 희망 농가	보조 80% 자부담 20%	신품종 종묘 구입비 및 생산 기자재 등 구입	
신소득작목 발굴 특용작물 모델화 시범	여주 생산 농업인 등	보조 80% 자부담 20%	가공·생산 기반시설, 신기술투입 자재, 신품종·신화종 종묘(구)비, 생산용 재료비 홍보 등	
딸기 시설하우스 노후교체 지원	20년 이상 또는 노후 정도가 심한 시설하우스에서 딸기 재배 농업인	보조 50% 자부담 50%	노후 시설하우스 교체 (최대 3동)	
푸른들 가꾸기 양파 종자대 지원	관내 1,000㎡ 이상 양파 재배농업인	보조 50% 자부담 50%	양파 종자 구입비 지원	
채소재배 기반조성	시설채소 재배 희망 농업인	보조 50% 자부담 50%	시설하우스 및 관정 설치	
미래먹거리 신소득작목 육성	신소득 원예특용작물 재배 희망 농업인	보조 50% 자부담 50%	신소득작목 종묘(종자) 및 기자재 지원	
원예작물 스프링클러 지원	원예작물 재배농가 (과수 제외)	보조 50% 자부담 50%	양수기 펌프 및 이동식 스프링클러(8조) 지원	

19. 2024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수요조사 안내 [담당 : 정화영 940-7742]

- 조사기한 : 2023. 4. 21.(금)까지
- 대 상 : 종자산업(종자업) 등록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
- 사 업 비 : 3 ~ 50억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내 용 : 종자산업 기반조성(시설·장비) 지원

20. 2023년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대상자 추가 모집 안내 [담당 : 정화영 940-7742]

- 신청기한 : 2023. 4. 26.(수)까지
- 대 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
- 지원비율 : 보조 90%, 자부담 10%
- 내 용

구분	사업기간	내용	비고
'23년 추가 모집	'23.6월 ~ '24.12월	생산농가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역량강화, 공동이용 농기계,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24년 모집	'24.1월 ~ '25.12월		

-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 940-8234)

21. 2023년 산불재난 예방 안내 [담당 : 정화영 940-7742]

- 안내사항

1.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각종 쓰레기 등은 절대로 태우면 안됩니다.
2.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는 출입을 금지합니다.
3.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면 안됩니다.
4.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면 안됩니다.
5. 화목보일러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6. 산불을 발견할 시에는 119 소방서 또는 남하면사무소(☎ 940-774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산불예방을 위한 농촌 불법소각 금지 안내

[담당 : 최지에 940-7743]

- 산불조심기간 : 2023. 5. 15.(월)까지 / 주민 계도 및 과태료 단속 병행
- 안내사항
 -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13%, 생활 쓰레기 소각 13% 등 영농부산물 소각행위가 산불발생 원인 중 높은 비중 차지
 - (불법소각)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법(법 제8조제2항)
 - (폐비닐·생활쓰레기) 허가·승인·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처리
 - (영농부산물) ①노천 소각은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과태료 부과, ②노천이 아닌 가정 내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홍보·계도 조치
 -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을 적치해 두었거나 소각할 우려가 보이는 경우, 소각의 흔적이 보이는 장소나 소각을 위한 용도로 예상되는 페드럼통 등이 있는 경우 ⇒ 홍보·계도 대상
 -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로 폐기물관리법과 산림보호법에 저촉되는 경우 ⇒ 단속·과태료 부과 대상
- ※ 불법소각시 과태료 50만원, 산불발생시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23.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농가) 수요조사 신청

[담당 : 최지에 940-7743]

- 신청기간 : 2023. 4. 12.(수) ~ 4. 28.(금)까지
- 신청대상 : 거창군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내 용 :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 근로자 체류기간 및 조건 : 5개월(E-8), 만 19세 ~ 55세 이하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고용주 준수사항 확인서 : **【붙임 9】** 참고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24. 2023년 도라지 재배기술 교육 안내

[담당 : 최지예 940-7743]

- 신청기한 : 2023. 4. 20.(목)까지
- 과 정 명 : 2023년 도라지 재배기술 교육
- 교육일자 : 2023. 5. 2.(화) 10:00~16:20
- 교육장소 : 경남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 대강당
- 교육대상
 - 약용자원연구소 도라지 묘종 분양농가 중 희망농업인(최우선)
 - 군내 교육 희망 농업인(우선) 및 군민
- 교육내용 : 친환경 도라지 일반·특수재배 방법, 도라지 재배 및 마케팅 우수사례 발표

25.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홍보요청

[담당 : 최지예 940-7743]

- 목 적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 홍보자료
 - 마을방송 홍보문안, 홍보브로셔 : 【붙임 10】 참고

26. 2023년 주민제안 농정 공모사업 신청·접수

[담당 : 최지예 940-7743]

- 신청기간 : 2023. 4. 3.(월) ~ 4. 28.(금)
- 참여대상 : 거창군민
- 사업내용 : 다수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농촌마을 공동사업
 - ※ 제외대상 : 이미 주민제안 농정 공모사업 시행 마을, 지역 특화 주민 소득지원 시행 마을
- 사 업 비 : 50,000천원(군비100%)
- 사 업 량 : 공모 후 사업비 내에서 결정(1~2개소)
- 접수방법 : 거창군농업회의소(☎940-5547)방문 또는 이메일(kkh5960@nate.com)접수
- 신청서식 : 【붙임 11】 2023 주민제안 농정 공모사업 제안서식 참고

27. 2024년도 산림소득 유통·가공분야 공모계획 알림

[담당 : 최지에 940-7743]

- 대상사업 : 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활성화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사업내용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 물류/단순가공, 거점/복합가공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보완 : 노후장비 교체 등 시설보완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 가공시설 신설·보완
- 공모기간 : 2023. 4. 11. ~ 6. 16.
- 공고게시 :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 알림홍보 ⇒ 입찰공모 참조
- 예산규모(전국) 및 지원조건

(단위 : 억원)

사업명	개소	예산 규모				지원조건(% (국:지:자)	신청 규모 (총 사업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산지종합유통센터	4	40	20	8	12	50:20:30	(단순가공) 2억~10억원 이내 (복합가공) 10억~20억원 이내 (시설보완)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가공산업활성화	1	20	10	4	6	50:20:30	20억원 이내

28. 2023년 임산물 관련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담당 : 최지에 940-7743]

- 신청기간 : 2023. 4. 5.(수) ~ 2023. 4. 21.(금)
- 사업내용

연번	사업명	지원품목	사업내용
1	임산물상품화 지원사업	【붙임 12】 참조	○ 내·외부 포장재 지원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보조 50) ○ 신청자격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생산자 단체 등
2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 임산물 내·외부 포장재 구입비 지원(보조 50) ○ 신청자격 : 【붙임 12】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29.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안내

[담당 : 최지에 940-7743]

- 신청기간 : 2023. 4. 17.(월). ~ 5. 19.(금)
- 신청대상 : 임업인 및 농업법인
- 대상산지 : 2019.4.1. ~ 20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직불금종류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 육림업 직불금 : 본인 소유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 공통지급요건
 -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직전년도 1년 동안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
- ※연간 90일 종사 증명
 - 기존수령자 : 수기영림일지 또는 스마트 영림일지,
 - 신규대상자 : 임업경영체 등록기간('22.10.1. 이전)으로 증명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요건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증빙
- 육림업 직불금 지급요건
 - 대상 산지 소유자(또는 입목등기)
 - 직전년도 10년 내 본인의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실적이 있는 3~30ha산지
-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 신청 대상 :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 공 고 문 : **【붙임 13】** 공고문 참고

30. 2023년 임산물유통기반 조성사업 신청 안내

[담당 : 최지에 940-7743]

- 신청기간 : 2023. 4. 5.(수) ~ 2023. 4. 21.(금)
- 사업내용 : 임산물 유통 기자재 등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기간 : 2023. 4월 ~ 12월
- 신청자격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접수장소 : “임산물재배지”의 읍·면사무소

31. 2023년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 2차 모집홍보

[담당 : 최지에 940-7743]

○ 모집기간 : 2023. 4. 4.(화) ~ 5.

31.(수)

- 사업명 : 2023년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
- 유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총괄기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관리기관)
- 운영기관 : 한국농수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사업내용 : 농업투자에 앞서 기술·경영분야의 심층컨설팅과 투자 전·후 사후관리를 통해 청년농의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투자 유도
- 지원대상 : 심층컨설팅 완료 후 1년 이내 농업 투자를 계획 중인 자
(사업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개별경영체 및 법인경영체)
- 지원규모 : 농업법인 및 개별경영체별 총 1,000만원 이내의 컨설팅 지원
(국비 900만원 + 자부담 100만원)
- 모집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lindasora@af.ac.kr)
- 제출서류 :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수산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문의처 : 한국농수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063-238-9753)

32. 2023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담당 : 최지에 940-7743]

- 신청기간 : 2023. 4. 3.(월) ~ 2023. 4. 21.(금)
- 지원자격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2018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대출 신청기한 : 2024. 12. 31.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 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연리 0.5%(고정금리)
 - 사용용도 : 농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 일부 운영자금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대출신청자료,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접수방법 : 읍면 경제산업담당 방문 제출

33. 2023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소액) 신청·접수

[담당 : 최지에 940-7743]

- 신청기간 : 2023. 4. 17.(월). ~ 5. 4.(목)
- 신청대상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표고재배하우스 설치(보완), 표고자목 및 톱밥배지 구입
 - 산지정리작업, 작업로, 울타리, 감시카메라 등
 - 저온저장고, 관수·관정시설 설치
 - 송이산가꾸기, 산양삼, 호두, 천마 등 기타임산물 재배 등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요건
 -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은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 원(보조)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한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신청서류
 - 산림소득사업 신청서
 - 임업인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부지 확보가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4. 2023년 산주직접실행 조림지 풀베기사업 신청·접수

[담당 : 최지에 940-7743]

- 사업명 : 2023년 산주직접실행 조림지 풀베기사업
- 신청기간 : 2023. 4. 19.(수) ~ 2023. 5. 4.(목)
- 신청자격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등
- 지원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행 완료 후 정산
- 선정절차 : 사업신청(산주 ▶ 산림과 및 읍·면사무소) ⇒ 조림지 풀베기사업 신청지 현지확인 ⇒ 거창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대상자 선정(산림과)

【붙임 1】 2023년 LPG소형저장 탱크 보급사업 지원대상(복지시설)

【붙임 2】 2023년 상반기 구제역 소·염소 일제접종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노인	생활	◦ 주거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법」 제31조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의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정책과			
					◦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이용	◦ 여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지원과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아동	생활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정책과	「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이용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과			
장애인	생활	◦ 생활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이용	◦ 지역사회 재활 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 장애인근로사업장			
영유아	이용	◦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보육기반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정신 질환자	생활	◦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정신질환자생활시설(입소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정신건강정책과	「정신보건법」 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		
	이용	◦ 사회복지시설[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				
노숙인 등	생활	◦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자립지원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용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급식시설 ◦ 노숙인진료시설 ◦ 쪽방상담소				
지역주민	이용	◦ 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사업법」		
기타시설	복합	◦ 결핵·한센시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사회복지사업법」		
	이용	◦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23년 4월에 구제역 백신을 일제히 접종합시다




접종 대상	전국의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소와 염소
접종 시기	2023년 4월 1일 ~ 5월 12일까지
접종 백신	<p>국내에서 사용 중인 2가 상시 백신(O+A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소규모농가(50두 미만)와 염소 농가는 시·군에서 일괄 공급하며, 소 전업농가(50두 이상)는 직접 축협동물병원에서 구매 * 소 소규모와 염소 농가는 보조 100%, 소 전업농가는 보조 50%
접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 수의사 등을 통한 접종 지원 · 전업농가(소 5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 : 자가 접종

접종 전·중·후 철저한 방역관리로 구제역을 예방합시다.

접종 전	백신 접종받은 농장 출입 시 방역복, 마스크, 방역넛신 및 장갑 등을 착용하고 1농장/1회 사용원칙 준수 철저
접종 중	백신 접종요령 준수, 접종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접종 후	접종인력·차량 및 접종에 사용한 물품 세척·소독 철저



접종 등록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자가 접종 한 경우 신속히 관할 지자체 또는 지역축협에 접종 신고 · (염소) 접종 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접종 상황 기록(3년간 보관)
-------------------	---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 접종 4주 후 백신 항체양성을 모니터링 검사 실시 ·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소 80%, 염소 60%)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 부과, 재접종 명령 및 4주 내 재검사 조치 
--------------	---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합니다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합니다.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농가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발생농장은 **보상금 전액을 감액**합니다.
- * 신고 지연, 소독 미실시 등 방역 준수사항 불이행 시에도 보상금이 감액됩니다.

가축을 거래할 때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돼지·염소)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소·중돈)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 *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송아지, 자돈, 어린 염소를 거래하려는 소유자 등은 어미 소, 모돈, 어미 염소의 '이전 예방접종일'을 기록한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구매자 등에게 인계 또는 휴대하도록 합니다.

농장 내부와 외부를 매일 소독 하고, 외부인·출입차량 통제·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 일반인은 국내 축산농가의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관계자는 구제역 등이 발생한 국가의 가축 사육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 *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철저
- *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 및 가축전염병 해외 발생 현황 등의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https://www.qi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축산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방역수칙, 예방접종 요령 등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의심 가축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가축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060

지방자치단체
1588-4060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면 안 돼요!


 동물 학대와 유기는 범법 행위입니다.

◆ **동물 학대의 범위**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실·유기동물 판매·살해 등

◆ **동물학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유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기르던 동물을 잃어버리셨거나 입양을 원하시나요?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확인**

: 시·군 구청에는 유기·유실동물을 구조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
공고 후 10일이 경과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동물은 입양 가능



반려견이 머물다 간 자리, 배변처리도 잊지 마세요.

 쾌적한 산책문화를 위해 외출 시에는 배변봉투를 꼭 챙겨주세요!

◆ **미수거시 과태료** 1차 위반 5만원 / 2차 7만원 / 3차 10만원



2023년 상반기 경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기간 | 2023.4.3. (월)
~ 4.28. (금)

단속대상 예시

- ❶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일명 '깡')
- ❷ 가족, 지인 동원하여 허위결제 유도 후 부당이득 수취
- ❸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 결제
- ❹ 실제 매출 이상의 상품권 금액 수취
- ❺ 상품권 결제거부, 상품권 소지자 불리하게 대우
- ❻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인 경우

적발시 경중에 따라 조치

- ❶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 ❷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 ❸ 경찰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거)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 수행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 	6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부정유통
신고센터**

☞ **게시판** www.kfmegn.or.kr ☞ **콜센터** 1899-9350

※ 사·군 지역사랑상품권 신고 건은 각 사·군에 전달되어 해당 사·군에서 처리합니다.

【붙임 5】 고병원성 AI 전파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안내

구분	주요 내용	대상	별칙
행정명령 (8건)	1.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 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및 농장주 등 관리하에 농장 진입 * 진입 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진입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3.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4.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5.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6.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7.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8.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공고 (7건)	1.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1회용 난좌 사용 및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등 도구·장비 세척·소독	산란계농장	
	3.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4.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5.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6.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7.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붙임 6】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방법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방역 및 검역 관리 중요

□ 정보 현행화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축산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를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에 적극 협조

* www.kahis.go.kr: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관련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 3 및 시행령 제15조의2)

* eminwon.qia.go.kr: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

퇴사 등으로 정보 삭제 희망 시 관할 시군구 및 검역본부 ARS(1670-2870)에 개별적으로 제외 신청(퇴사증명서 등 증빙 제출 필요)

□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 신고 및 입국 신고를 해야 함

○ 출국 신고와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 축산관계자의 범위

<p>1.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p>	<p>6.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품,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수입 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p>
<p>2.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p>	<p>7.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판매업자와 고용된 자</p>
<p>3. 수의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동물병원 개설자 및 그에 고용된 자, 수의·축산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학계(수의학·축산학·동물자원학 전공 교수·강사·대학원생) 및 축산 관련 단체 종사자, 동물원·국립생태원 등에 고용된 자</p>	<p>8.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9.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자</p>
<p>4.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p>	<p>10.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집유업자 및 원유수집 기사</p>
<p>5.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사 및 수의·축산 분야 직원</p>	<p>11. 도축장의 종사자 및 기타</p>

* 동거가족: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사는 곳이 동일한 가족 포함)

□ 축산관계자 정보 자진등록 방법

- ①번 또는 ②번 중 선택하여 접속 후 ③,④번 과정 진행하여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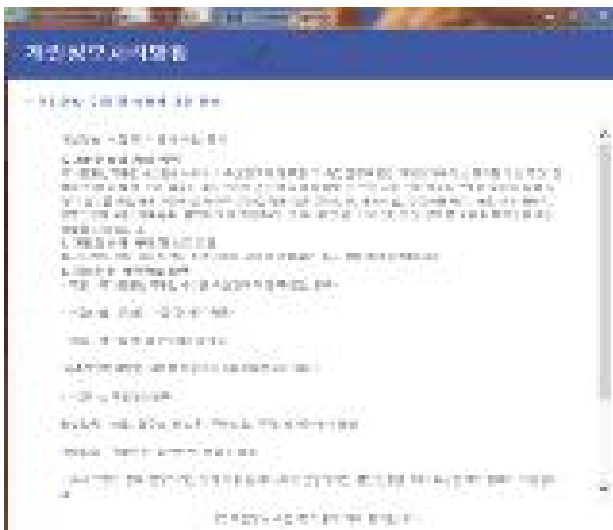
① KAHIS(www.kahis.go.kr) 접속



② 검역본부(eminwon.qia.go.kr) 접속



③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체크 후 본인인증

④ “축산관계자 등록” 후 저장



필수선택 사항(성명, 주민번호, 축산관계자유형, 핸드폰 번호, 국적, 국내주소)을 모두 입력 후 저장 선택

※ 시스템 사용 문의: 032-740-2999

미등록 축산차량의 GPS 장착으로 가축질병 전파를 차단합시다

미등록 축산차량의 GPS 장착으로
방역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관련 협회, 업계, 차량소유주 대상 사전홍보 실시 (4.1. ~ 4.30.)
-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GPS 장착) 기간 운영 (5.1. ~ 6.30.)
-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 강화 (7.1. ~ 과태료 부과)

GPS 미수신 차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장기간 출입 정보가 없는 축산차량 대상
전화조사, 상시점검 등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등록을 유도하고,
미수신 차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3 모바일교육(URL)

대상

- ☑ 일반농업인(기존 직불금 정상 수급자)
* 제외(신규신청자, 전년도 감액자)

교육방법

- ☑ 교육 대상자의 휴대전화로 접속주소(URL)를 송부하면 농업인이 접속을 통해 교육영상 시청(약 15분)



카톡 또는 문자가 오면 접속 URL을 눌러주세요.

세부진도현황 이러보기

지시	목차(메이저명)	학습여부	학습하기
1	'23년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23년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x	학습하기

교육접속 및 학습



교육 영상 시청(15분)

교육문의

- ☑ 읍·면·동사무소 또는 콜센터 1811-8656

4 자동전화교육

대상

- ☑ 70세(1953년생) 이상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규신청자, 전년도 감액자는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수강

교육방법

1644-3656에서 전화가 오면
5분 동안 교육 음원 청취

전화를 받으면

“안녕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시는 농업인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셔야~~~~”로 시작

마지막 부분인

“공익직불제 농업인 전화교육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까지 듣고 전화를 종료

*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했거나, 끝까지 듣지 못한 경우

1644-3656으로 전화가 왔던 전화기로
다시 전화를 걸어 재수강

교육문의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콜센터 1644-8778 (내선2번)

【붙임 9】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서 및 고용주 준수사항

농업인	성 명		주 소 (주민등록상)		연락처	
			생년월일		경영체 등록번호	경영체 등록번호기재
농업 규모	농지경작 면적 작 목		근 로 기 간 (5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인력 필요시기 정확하게 기재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인원	E-8(5개월) : 명 남) 명 / 여) 명 ※ 성별 구분					
숙소주소						
제출서류	1. 고용주 준수사항(고용주 서명) 2. 주민등록등본 3. 농업경영체확인서 4. 숙소점검확인서(숙소구비 필수) - 냉난방 설비, 온수 샤워시설, 숙소 내부 장금장치, 소화기&화재감지기 등					
<p>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 위 신청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라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임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right;">2023. . .</p> <p style="text-align: right;">농업인(신청인) : 성명 (인) 읍·면·동·시장·군수 귀하</p>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시·군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3. 04. ~ 2023. 12.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지원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 무 원 확 인 내 용 (해당 읍·면사무소)					확 인 자	
■ 도내 주소 및 거주여부 : 일치(), 불일치()					직	(서명)
					성 명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등록(), 미등록() ■ 농업경영체 :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직	(서명)
					성 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실제 농업종사 및 주업이 농업인지 여부 : 여() 부()					직	(서명)
					성 명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준수 사항

I 근무조건

① 휴일 : 한 달에 4일

※ 작물 특성 상 비오는 날 작업이 어려운 경우 ⇒ 휴일로 대체 가능

② 근로시간

○ 1일 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근로자와 합의하여 1일 10시간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 제외)

예) 09:00 출근, 점심시간 1시간 부여시 ⇒ 09:00 ~ 18:00

07:00 출근, 점심 및 휴게 총 2시간 부여시 ⇒ 07:00 ~ 17:00

○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③ 최소 근무일수 보장 및 지정 근무지 준수

○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75%(최소 113일) 이상 고용 보장**

○ 근로계약한 고용주 농가에서만 근무가 가능하며, 출입국 허가 없이 타고용주의 근무지에서는 고용 불가능

⇒ 고용주 변경시 : 변경 전 출입국관리사무소 근무처변경허가 必

※ 위 조건 위반 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최소 200만원 ~ 1,000만원의 범칙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됨.**

④ 근로자 무단이탈 : 무단이탈 발생 즉시 고용주는 거창군 전략담당관(☎ 055-940-3373)으로 신고

II 급여조건

① 초과급여 및 휴일근무

○ 근로계약서 이상 연장근로 시 **시간급의 1.5배** 가산한 금액 현금지급

⇒ 시간급(9,620원) × 1.5배 = **14,500원/시간**(십원단위 올림)

○ 연장근로 시 근로 당일 현금으로 지급해야하며, 현금지급이 어려울 경우 통장 입금

○ 휴일근무 시 시간급 1.5배 가산한 금액의 일당을 당일 지급

⇒ 시간급(9,620원) × 1.5배 × 8시간 : 115,500원(십원단위 올림)

② 산재보험 : 월 급여의 2.1% 금액을 고용주가 부담

③ 월 급여

-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
 - 2023년 최저임금(9,620원) × 월 근로시간 = 2,011,000원
 - ※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 전액을 계절근로자 명의 통장에 직접 지급
 - 농가에서 숙박 시 : 월 20만원 공제 / 식사 제공 시 : 매주 5만원 공제

< 급여 지급 예시 >

▶ 농가에서 숙식을 하는 경우

: 월 급여(2,011,000원) - 숙박비(200,000원) - 식비(50,000×4주) = **1,611,000원**

▶ 출퇴근 하는 경우

1) 농가에서 중식을 먹는 경우(매주 중식비 현금지급 또는 농가에서 식사 제공)

: 월 급여(2,011,000원) - 중식비(70,000원/달) = **1,941,000원**

2) 농가에서 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즉, 본인이 도시락을 싸서 다니거나 음식을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

: 월 급여(2,011,000원) - 공제 0원 = **2,011,000원**

Ⅲ 협조사항

○ 외국인등록 협조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의무
- ※ 등록의무 위반 시 : 범칙금 20만원 ~ 100만원 부과(출입국관리법 제31조)
- 군에서 창원출입국관리소 단체방문을 통해 외국인등록 일괄 추진
- 외국인등록을 위한 출입국관리소 방문일정 통보 시 당일 휴무 지정 및 근로자를 출발장소(농업기술센터)까지 수송 협조

○ 근로자 통장은 개설 후 군에서 방문배부 할 예정이며, 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현금카드)을 고용주 또는 제3자가 보관할 수 없음.

○ 숙소는 냉·난방 설비, 샤워시설, 침구류, 취사도구, 소화기 등의 필수 시설·물품을 구비하여 함.

근로계약사항 미 준수 시 경고나 주의를 줄 수 있으며, 계약 미이행 시 추후 외국인 근로자를 배치받을 수 없음. 또한, 임금체불 시 앞으로 거창군에서 진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여러분들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근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주시고, 근로계약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고용주 :

(서명)

【붙임 10】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마을방송 문안 및 홍보물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마을방송 문안

안녕하십니까? 00마을 이장 000입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의 안정적인 영농여건 마련을 위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우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지자체, 농·축협에서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나이(만15~87세)·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총 12기종에 대해 가입(보험료는 기종 및 가입금액별 상이)이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및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농협생명(농업인, 1544-4000), 농협손보(농기계, 1644-9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인안전보험 홍보물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인의 필수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안전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나이·성별에 상관없이 동일)로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보험**입니다.
만 15~87세 농업인은 누구나 가입가능(일부 상품 84세)

대표보장

상해 및 질병치료

실제 치료비용
최대 5천만원

장해

최대 1억 2천만원

사망

최대 1억 2천만원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영세농업인의 경우 **70%**)하고,
지자체 및 농 축협에서도 **추가 지원**

농업인의 **자부담 보험료**는 **연간 2만원 내외**(지역별·상품별로 상이)

농업형태별 보험상품

구분	가입가능 상품
농업종사기간 90일 이상	농업인안전보험(일반 1·2·3형, 산재형)
농업종사기간 90일 미만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겸업농(직장가입자)	산재근로자 전용 농업인안전보험(전일·휴일보장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가입문의 지역 농·축협, 농협생명 | 1544-4000 |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농기계종합보험 홍보물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인의 필수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종합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지자체 및 농협에서도 추가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01 대상 농기계

- ① 경운기 ② 트랙터 ③ 콤바인 ④ SS분무기 ⑤ 승용관리기
- ⑥ 승용이앙기 ⑦ 항공방제기 ⑧ 광역방제기 ⑨ 배설기 ⑩ 농용굴삭기
- ⑪ 농용동력모반차 ⑫ 농용로우더 / (총 12종)

02 사업대상자

대상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농어업경영체 특성 및 자립에 관한 법률 제 104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이나 농어업인의 경우 국고지원 가능

03 국고지원

- 농기계손해: 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50%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보험료의 50% 지원
(단, 항공방제기의 경우 대인배상, 대물배상 보험료 50% 지원)
- * 영농농업인의 경우 70%까지 지원

04 보장내용

농기계 사고, 농작업 중 사고발생 시 농기계뿐만 아니라, 농업인 자신의 신체상해, 리안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 세부내용 확인하고 싶으시면 QR코드 스캔하세요



주요 안전장치 확인 제도

- **내년** 주요 안전장치의 구조가 임의 개조 변경된 농기계의 경우 국고지원 제한
- **확인대상 안전장치**
 - 2020년 이후 출고(제조년도 기준)된 트랙터: 안전프레임(또는 안전장치, 후사경, 지속자랑 표시등, 안전벨트)
 - 2021년 이후 출고(제조년도 기준)된 경운기: 전조등, 벨트구터, 이안반사판(또는 지속자랑 표시등)
 - 2022년 이후 출고(제조년도 기준)된 농용동력모반차(승용형): 후사경, 전조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지속자랑 표시등



가입문의: 지역 농·축협, 농협손보(1644-9000, www.nhfire.co.kr)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붙임 11】 2023 주민제안 농정 공모사업 과제 제안서(서식)

	2023 주민제안 농정 공모사업 과제 제안서
--	--------------------------

※ 접수번호 :

사업명 <small>*대표성이 있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게 표시</small>				
제안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E-mail
공동제안자				

* 제안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가로 표기 가능

사업목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 주요내용

- 개소당 사업규모 : 규모, 대상면적 등
- 사업대상 : oo마을회(대표 : 000)

※ 대상마을 등 표시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에 들어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기간 :

- 개소당 사업비 : 백만원

- 소요내역 및 사업비 산출근거

※ 적정 사업비 책정여부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업목적에 맞는 산출내역만 표시

* 산출내역 단가표는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표시

세부사업명	단 위	규 격	수 량	금액 (원)
계				

□ 기대효과

-
-

※ 막연한 기대효과 보다는 농가소득, 비용절감 등 정량적인 수치 위주의 기대효과 표시

□ 향후 운영방안

-
-

※ 향후 운영방안, 수익배분등 세부 공동규약 등

2023년 주민제안 농정 공모사업 서류평가 심사표

○ 선정 대상자 자체심사 심사표

- 사업단체명(대표) :
- 사업신청내역 :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준	평가점수
총 점(100점)			
1. 사업 목적의 이해도 (15점)	- 주민제안 농정 공모사업 목적과 주제가 구체적이고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	- 우수 15 ~ 11점 - 보통 10 ~ 6점 - 미흡 5점 이하	
2. 사업계획의 구체성 (15점)	- 사업기간 및 방법, 사업예산 분배가 적절한 정도	- 우수 15 ~ 11점 - 보통 10 ~ 6점 - 미흡 5점 이하	
3. 사업실현가능성 (10점)	- 사업 부지 확보, 수익금 배분계획 수립 또는 공동참여자 혜택 방안 마련	- 2개 10점 - 1개 5점 - 0개 0점	
4. 공동참여자 및 수혜자 (20점)	- 공동참여 및 수혜자 정도	- 40명 이상(20점) - 30명 이상(15점) - 20명 이상(10점) - 10명 이상(5점)	
5. 공동이용 가능 사업 내용 (10점)	- 공동 이용 가능 사업 내용	- 공동이용시설 설치(10점) - 공동이용기계장비 및 기자재 구입(5점)	
6. 농정발전에 부합 여부 (20점)	①농산업 경쟁력 상승 ②농외소득원 개발 ③농촌 환경 개선 ④농민 경제 안정화등 농정 발전에 공모 사업이 부합하는 정도	-우수 20 ~ 14점 -보통 13 ~ 8점 -미흡 7점 이하	
7. 활용, 전파가능성 및 효과성 (10점)	- 주민제안 농정공모사업 후 지역 공동체 활동 및 전파 가능성 정도	-우수 10 ~ 7점 -보통 6 ~ 4점 -미흡 3점 이하	

【붙임 1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삼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플,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율나무, 꿀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붙임 13】 2023년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거창군 공고 제2023-646호

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거창군수

※ 「임업직불제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지급요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23년 임업직불금 지급순서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1. 신청기간 : 2023. 4. 17. ~ 5. 19.(33일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지급대상 산지

-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① 국유림 및 공유림
- ②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 포함)
- ③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 포함).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일부 산지는 지급대상 산지에 포함
- ④ 등록신청 연도에 농업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⑤ 등록신청 연도에 육림업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중복 등록 신청한 산지
- ⑥ 「임업직불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⑦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다만,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지구·지역·단지의 산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산지분에 대하여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는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
 -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다목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산지
 -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농공단지의 산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 ⑧ 다음과 같은 휴경 중인 산지
 -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
 - (육림업)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산지
- ⑨ (임산물생산업 한정)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
 -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버섯류 및 수목부산물류는 제외한다)을 파종 또는 식재(접목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버섯류를 종균을 접종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버섯류 중 송이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수목부산물류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과 죽순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 ⑩ (육림업 한정)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참고자료 참조)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 (임산물생산업) 「임업직불제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①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②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③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①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②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③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임 산 물 생 산 업	육 립 업
<p>① 산지 소재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u>농촌*</u> 외 지역 거주자(주업요건 해당자는 지급)</p> <p>* 농촌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 - 시(특·광역시 제외)의 동 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지역 - 자치구(수도권 제외)의 동 지역 중 생산·보전녹지(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수도권 제외) 	
<p>②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p>	
<p>①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p> <p>②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소규모농가직불금 수급자 및 해당 농가 구성원</p> <p>③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면적직불금 지급 면적과의 합이 30만 제곱미터(농업법인 5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 면적</p> <p>④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p> <p>⑤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 하거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p>	<p>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자</p> <p>*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을 말함</p> <p>②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p>

다. 지급대상자 거주 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업인	농업법인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3ha 이상 경영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10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업인	농업법인
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고, 해당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라.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산물생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

지급요건 항목	기준
①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 (지급대상이 아닌 산지와 타인에게 임대 해준 산지 포함) * 신청인은 임가 구성원 각각의 소유산지 정보를 제공	1.55ha 미만
③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⑤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직전 연도 기준 2천만 원 미만
⑥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직전 연도 기준 4천500만 원 미만
⑦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직전 연도 기준 3천800만 원 미만

- * 임가구성원 : 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②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 **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❶항목의 기준을 초과하나 ❷~❸항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가로서 면적직불금으로 산정 시 120만 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 가능
- ***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면적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지급

4. 지급단가

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20만 원

나.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일반 품목	면적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단가	94만 원/ha	82만 원/ha	70만 원/ha
송이	면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단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다. 육림업 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면 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단 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5. 신청 관련 사항

가. 기존 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
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 관할 읍·면·동 : 산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나. 임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되 폐경, 휴경면적은 신청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
록 주의하고, 임업직불금 신청 종류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다. 임업경영정보(주소, 품목, 재배면적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 임업직불금 신
청 이전에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임업경영정보 변경 신
청해야 함(등록정보가 다를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
음)

라.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임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대표자가 읍·면·동에 제출

1)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임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규모임가”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 성합니다.		
		-
		-

- 2) 산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선택
- 3)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임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소규모임가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다. 제출서류 : 필수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과 직전년도 제출서류가 유효할 경우 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공통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19.4.1~'22.9.30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대체 가능 * 다만, 분할·합병 필지 등으로 산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 (육림업) '13.1.1~'22.12.31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실적 증명서류 ① 산주 직접 실행한 경우 : 산림경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된 실적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신고수리증, 전·중·후 사진첩 ➢ (조림,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사업장 전체의 사업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중·후 사진첩(필수), 영림일지(사진 필수), 산림사업법인 등과 계약으로 추진한 경우 계약서·설계도서·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②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실행 여부 확인 가능한 공문서(산림부서 확인 서류로 대체 가능)
3.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 ※ 해당자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확인서 + 원인증명서류 ▶ (중중토지) ① 중중대표가 신청할 경우 중중규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중중대표에게 경작권을 부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중중회의록, ② 중중원이나 타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중중(중중대표)과 체결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22년 직불금 신청 시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미제출(단, 계약기간이 '23.9.30일 이전인 경우에는 '23.9.30일 이후로 갱신하여 재제출 필요,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4. 소임가직불신청자 제출서류 소규모 ※ 해당자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가 구성원 소유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야대장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 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영림일지(연간 90일 이상)·농기계 임대계약서·일용직 고용·농자재 구매·수확한 농산물 판매 등을 서류 등으로 증명(간이영수증 단독 불가) ▶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시설재배업을 통한 연간 소득금액 증명서류

구 분	제출서류
<p>5. 승계대상자 공통</p> <p>※ 해당자 필수</p>	<p>※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연도 임업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임업직불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p>6. 임산물 판매액 및 경영투입비 증명하는 서류 공통</p> <p>※ 해당자 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물 판매금액 증명서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신청자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하거나 ② 임산물 판매실적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 <p>【증명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하 등 납품 시) 시장, 공판장, 도매인 등과 거래한 임산물 판매계약서, 납품확인서 또는 임산물 출하·납품·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심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직거래 시) 입금내역, 카드결제영수증, 전자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와 거래내역서(구매자 인적사항-연락처, 품목, 금액 등 기재),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p>* 간이영수증 단독 증명 불가</p> ▶ 경영투입비용 증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하거나 ② 경영투입비용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 <p>【증명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자재, 종자·육묘 등 구입비 ➢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경비 등 사업비 및 설계·감리비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1호 가목(산림경영관리사), 다목(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 단 주거목적 제외), 라목(그 밖에 간이 임업용 시설과 임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유지 비용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4호 가목(임도), 나목(작업로, 임산물 운반로)의 설치·유지 비용과 제6호(임산물 재배)에 투입된 비용 <p>*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부담 비용만 인정(본인+가족 인건비 등 불인정). 간이영수증 단독 증빙 불가(입금내역, 신용카드 결제 등 지출내역 추가 증빙)</p> <p>*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을 위한 비용으로 산지전용 대상시설·행위에 투입되는 비용과 임산물 가공·판매·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투입된 비용 불인정</p>

구 분	제출서류
<p>7. 일시적 채취행위 예외기준을 입증하는 서류 임산물생산업</p> <p>※ 해당자 필수</p>	<p>▶ (송이) 송이 생산 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매년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 생산함을 증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숲의 밀도와 빛의 양 조절을 위한 숲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② 초본류, 관목류, 참나무류 움싹 등 하층식생 정리 ③ 낙엽, 나뭇가지, 부식층 등 지피물 제거 ④ 흙덮기, 물 주기 등 송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작업 <p>【증명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이산가꾸기사업 등의 공문, 사진, 자재구입 영수증(실행도면), 계약서 등 실행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p>▶ (수액과 죽순) ① 파종 또는 식재하고, ② 입목과 대나무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년 산지를 관리함을 증명</p> <p>【증명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종, 식재 증명 : 조림 대장, 공문서, 묘목 구입 영수증, 사진 등 파종·식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지속적인 임지 관리 : 공문서, 자재구입 영수증(실행도면), 사진 등 지속적인 임지 관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p>8. 종사요건을 증명하는 서류</p> <p>공통필수</p>	<p>▶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임업경영체 등록기간 또는 지급대상 산지 소유·임차 기간으로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p> <p>▶ 연간 90일 종사 증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존수령자) 영림일지(스마트 또는 수기)로 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물생산업) 임 내 60일 이상, 임 외 30일까지 인정 ▶ (육림업) 임내 45일 이상, 임외 45일까지 인정 * (임 내) 임산물생산업·육림업 활동, 산림보호활동 등 * (임 외) 임업기자재 구입, 임산물판매, 경영계획 수립 상담, 지자체 상담, 기반시설 지원 이력, 임업 관련 교육 이수, 임산물 홍보, 임산물 품질 인증, 계약재배, 시설유지관리비용, 임차료 청구 등 * '22년, '23년 사업시행지침의 서식에 의한 영림일지만 인정 ② (신규대상자) 임업경영체 등록기간('22.10.1 이전)으로 증명
<p>9.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취득한 자</p> <p>공통</p> <p>※ 해당자 필수</p>	<p>▶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임을 증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속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증여 ② 양도인과 양수인 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를 1인으로 특정하고 나머지는 직불금 수령을 포기

바.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임업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장·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증명서류에 있어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2023년 6월 15일까지 보완 가능

6. 유의 사항

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정보 수정

○ 임업인이 신청한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2023년 8월 10일까지 변경신청·신고해야 함

○ 임업직불금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및 임업인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산지의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변경 신청(방문, 전화, 인터넷 등)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후 관할 읍·면·동에서는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임업인은 읍·면·동의 요청에 적극 협조

* 자격요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의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 요청

나.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 지급됨

○ 임업직불금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실 경영하는 임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산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됨

* ① 허위 등록 시 3~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시 전액 환수 및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임업경영체 종합포털 「임업-in」 (www.foco.go.kr)에서 2023년 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

○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 1588-3249

□ 임업경영체 등록(변경)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 033-738-6185~6, 6172~6
- 동부지방산림청 : 033-640-8651~8
- 남부지방산림청 : 054-850-4101~12, 4116, 4117
- 중부지방산림청 : 041-850-4048~9, 4063, 5307, 5309, 5313~22
- 서부지방산림청 : 063-620-4681~3, 4645~8, 4655, 4656, 4659